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77-10

www.mohw.go.kr



202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건강검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 1

1-1. 국가건강검진 추진 연혁	3
1-2.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4
1-3.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6
1-4.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7

2. 일반건강검진 사업 / 9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11
----------------------	----

3.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 21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23
3-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4

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 75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77
-----------------------------------	----

5.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 87

5-1.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89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95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100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103

6. 부록 / 123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25
--	-----



2023 건강검진사업안내

CHAPTER 0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1-1. 국가건강검진 추진연혁

1-2.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1-3.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1-4.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1-1 국가건강검진 추진 연혁

1950년	결핵, 기생충질환 집단검사(대한결핵협회, 기생충협회)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문교부령 15호)
1953년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건강진단 의무화(근로기준법 제71조)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1988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예방사업 실시
1995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199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2005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로 확대 (보건복지부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06년	직장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진 실시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 20%로 하향 조정)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공포(제정 '08.3.21. 시행 '09.3.22.)
2010년	제1차('11~'1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만4세) 확대
2012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실시(만 19~39세 세대주 및 만 41~64세 전체) 공휴일 건강검진 시 상담료 30% 가산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66~71개월) 확대(4.1)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1.1.)
2016년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 간암검진 주기 조정 연2회(1.1.) 학교박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
2017년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수가(30%) 적용(1.1.)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C형 간염검진 시범사업 추진(45개 시·군·구)
2018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본인부담금 없음)
2019년	20~30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폐암검진 신설
2021년	제3차('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신생아(생후14일~35일) 검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주기 및 횟수 변경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30~41개월 추가)
2023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80%이하 까지 확대

1-2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업 무	2022년	2023년
공 통	관련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1.12.31)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2.12.30)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 간 MOU 체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시·도, 시·군·구), 공단이 공유함	
	검진비 예탁금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 월(1분기는 둘째 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 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 6,621백만원	

사업명	업 무	2022년	2023년
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인 자로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 의심자 * 21.11월 보험료 금액(70%) 직장가입자(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161,000원 이하)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22.11월 보험료 금액(80%) 직장가입자(21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159,500원 이하)
	예산 (국비 기준)	- 1,453백만원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 617백만원 • 발달 정밀검사비 : 836백만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4백만원	
4. 건강검진 사업 운영	예산 (국비 기준)	- 1,358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89백만원 •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 1,258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89백만원 • 연구개발비 : 2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1-3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구분	영유아(0세~만6세) (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성인기(20~64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암관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암관리법 제11조
대상	만0~6세 전체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9~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 65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 환기검진) * 65세 이상 건강진단 -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실시
	- 암검진		-	-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검진주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회)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총 4회)	3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검진 수행 주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학교장	여성가족부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비용 부담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본인부담 없음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부담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부담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비고	'07.11.15 실시	'08.1.1 실시	교육부 주관 (1951년 실시)	여성가족부 주관('16년)	- 일반: '80년 실시 - 암: '90년 실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66세) : '07~'17년까지 실시	- 일반: '12년 실시 - 암: '99년 실시		-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18년 실시

1-4 2023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예산	2022예산 (a)	2023예산 (b)	증감	
				(b - a)	(%)
합 계(A+B)	738,051	756,456	858,214	101,758	13.45
○ 일반건강검진 사업	648,133	666,951	773,479	106,528	15.97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88,353	87,893	83,223	△4,670	△5.31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舊, 보건소유지관리비)	253	254	254	-	-
○ 건강검진사업 운영	1,312	1,358	1,258	△100	△7.36
국 고(A)	9,551	9,686	9,586	△100	△1.03
○ 일반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 포함)	6,633	6,621	6,621	-	-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353	1,453	1,453	-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舊, 보건소유지관리비)	253	254	254	-	-
○ 건강검진사업 운영	1,312	1,358	1,258	△100	△7.36
건강보험재정(B)	728,500	746,770	848,628	101,858	13.64
○ 일반건강검진 사업	641,500	660,330	766,858	106,528	16.13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87,000	86,440	81,770	△4,670	△5.4

* 국고(A)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관련 비용(국비 기준)

* 건강보험재정(B) : 건강보험가입자 검진 관련 비용



2023 건강검진사업안내

CHAPTER 02

일반건강검진 사업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 포함)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88년)
 -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19.1.1)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기간을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검진주기 개선('21.1.1)

4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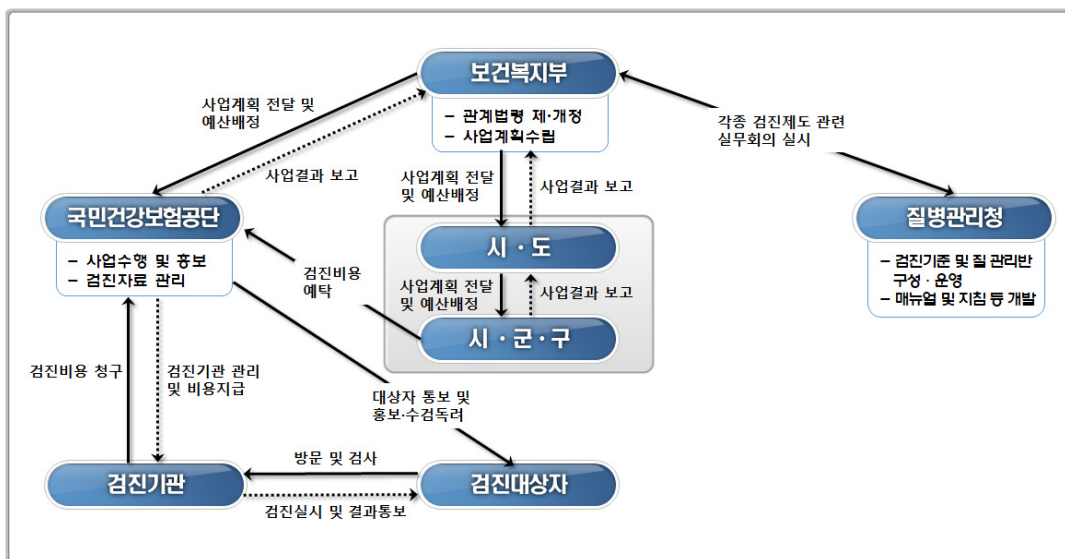
가.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 분	대 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85,236명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27,449,6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23. 1. 1.자 기준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나. 사업수행체계도



다.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 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 : 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 : 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관리

라.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 -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8.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세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11.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 별첨) 참조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4.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2)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 4의 별첨) 참조

마.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바. 검진비* : 47,820원(구강검진비 7,990원 별도)

* 진찰료 9,030원 + 요검사 78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포함) 29,690원 + 흉부방사선촬영 8,320원

※ 성·연령별 검진항목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비는 “검진항목별 검진비용(p15)” 참조

※ LDL콜레스테롤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측정하며, 실측정한 경우에만 해당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사.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금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가-1 (AA154)×52.1%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030 <u>2,710</u> 50,350
2. 흉부방사선 촬영 ○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1]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2] 필름 (14"×14") [3]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1]+[2] [1]+[3] [1]+① [1]+② 다-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8,320 8,640 6,960 7,890 (6,960) (1,360) (1,680) = (930)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780
4-1. 혈액검사 ○ 혈액소 ○ 공복혈당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e-GFR)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11,370 (1,050) (1,340) (1,920) (1,880) (3,490) (1,690) =
4-2. 혈액검사 (남 24세, 여 40세 이상 4년마다)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18,320 (1,590) (6,450) (3,800) (6,480)
5. 구강검진 ※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금	가-1 (AA100)×52.1%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7,990 2,400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원)
6. B형 간염검사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누-700 (D7001)	<u>2,730</u>
- 정밀 :	누-701 (D7015)	<u>12,470</u>
핵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누-701 (D7016)	<u>14,240</u>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누-700 (D7002)	<u>3,580</u>
- 정밀 :	누-701 (D7018)	<u>13,280</u>
핵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누-701 (D7019)	<u>15,060</u>
7.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XA)	다-334(HC341)	<u>38,220</u>
○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PDEXA)	다-334(HC344)	<u>24,040</u>
○ 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말단골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QCT, PQCT)	다-334(HC343)×82.12% 다-334(HC346)×82.12%	<u>29,270</u> <u>29,270</u>
○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다-334(HC344)×50%	<u>12,020</u>
8. 인지기능장애 (KDSQ-C) (66세 이상 2년마다)	나-622(F6221)×20%	<u>4,560</u>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PHQ-9)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너-701(FY751)	<u>4,510</u>
10.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기본) 6,000 7,500 9,000 10,500 12,000
11.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2,400
12.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3,000

아.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문”을 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진확인서’는 공단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청구
 - *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진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조치
 -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익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현황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자.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차. 관련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치매) 의심자는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로, 정신건강(우울증) 의심자는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



2023 건강검진사업안내

CHAPTER 03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3-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만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07.2.16)
 - 만 6세 미만 영유아 295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지침 제정('07.9.27)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건강검진 실시('07.11.15)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고시('07.12.26)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실시('08.1.1)
- (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10.1.1)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정('09.1.19)
- 66~71개월 영유아건강검진 추가('12.4.1)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 개발·시행('14.9.1)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개정·시행('15.9.1)
- (9~12개월)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및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 변경('17.12.20)
-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 추가('21.1.1)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개정·시행('21.4.1)
-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30~41개월 추가) ('22.6.30)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08 ~ 계속

나.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 분	대 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21,539명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2,504,40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월령별 검진 시작월 1달 전에 선정
 - * 상기 당해연도 대상자 수는 '22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다.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2.12.30)에서 정한 검사항목(별표 3)에 따라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약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라. 검진주기 및 비용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27,100
2차	생후 4~6개월	-	29,200
3차	생후 9~12개월	-	37,120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3,120 (구강 15,340원 포함)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51,020 (구강 15,340원 포함)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820 (구강 15,340원 포함)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8,920 (구강 15,340원 포함)
8차	생후 66~71개월	-	33,580

* 검진가능 기간 : 출생일(2023.1.1.)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까지

☞ 1차 검진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되는 날까지가 검진 가능 기간임

〈예시 : '23. 1. 1.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 14~35일) 검진 : '23. 1. 14 ~ '23. 2. 4
- 2차(생후 4~6개월) 검진 : '23. 5. 1 ~ '23. 7. 31.
- 3차(생후 9~12개월) 검진 : '23.10. 1 ~ '23. 1. 31.

마.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5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영유아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를 우선적인 목표 질환으로 선정
 - 1세 미만의 경우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3회의 검진을 통해 간단한 육안 진찰로 가능한 이상 소견 발견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
 -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 적용(신체계측, 필수 문진 사항 등)
 - ⇒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정밀검사 유도 또는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 실시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수면자세, 카시트 사용방법 등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 교육 실시
 - 영유아의 모유수유, 이유식 등 검진 시마다 해당 월령에 필요한 영양 교육 실시
 - 해당 월령에 필요한 건강교육 및 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

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자체 보조)

가. 예산

구 분	예 산
만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617백만원

나. 사업수행절차

건강검진 절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수립,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을 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가정에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 검진 즉시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지사에 웹으로 검진비용 청구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취약계층),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 : 공단(본부)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 : 공단(본부)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관리

다.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2~8차)를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디지털 전자문서로 발송 후 미열람자에 대해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월령별 검진시작일 전월 25일까지)

※ 1차(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아기초검진안내문 또는 알림톡 발송

- 영유아건강검진 사전알람(SMS) 서비스 실시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진확인서'는 공단지사에서 수시 발급
- 출생신고 전 영유아 1차(생후 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검진기관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후 검진가능

*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공단에서 수검대상자에게 배부한 건강검진표 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가 속한 월령대의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강검진비용은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청구

※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사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도록 조치
-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 확인·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현수막, 지역언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안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수검관리 지속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영유아검진기관 수 확대(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검진참여) 및 공휴일 검진 독려
 - 1차(생후 14일~35일) 관련 관할 지역 내 보건소 및 영유아 검진기관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적극 참여 협조 요청
 - 생후 30일 이내 산부인과 재 방문 진료 등을 고려, 1차 검진 접근성이 높은 산부인과 등 영유아 1차 검진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 참여 독려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및 영유아 관련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자원 연결망 구축

5) 사후관리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 및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의 경우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발달지연 의심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및 특수 교육지원사업 안내 ※〈붙임1, 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 보건 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음

라.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7 기대효과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데 기여
-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 시킴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마련

붙임 1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질환 선정 이유

구분	세부 질환	선정 근거
성장	성장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 등	정상 성장에 대한 추적 관리 대상으로 소아 진찰의 기본 항목
발달	발달 지연	-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의료비 증가가 심화되는 대표적 질환 - 장기적으로 장애아가 될 수 있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 효과 극대화 - 장애의 최소화 외에도 학업성취 등 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사회 부적응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
시각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 등	- 간단한 진찰로 심각한 안질환 발견 가능하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경과 우수 - 영아내사시는 생후 3~4개월 이후에 발생하며 조기에 치료해야 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 가능 - 소아 시력은 만 7~9세까지 발달하므로 이 시기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
청각	난청	- 인구 1,000명당 1~2명 발생 - 문진표를 이용하여 위험군을 선별하여 확진검사를 받도록 안내 - 조기에 치료할 경우 언어장애 최소화
안전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감염 질환 등	- 불의의 사고는 우리나라 1세 이상 영유아의 사망원인 제1위를 차지 - 위험에 대해 알고 이를 피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하면 사고의 90%는 예방 가능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 - 미국에서는 엎어 재우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아돌연사증후군의 발생률 감소 - 각종 감염 질환은 손을 잘 씻음으로써 줄일 수 있어 단일 예방접종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
영양	영양 불균형, 철결핍빈혈, 편식 등	-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영양 섭취 방법이 변화해가는 시기 -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 - 대소변 가리기의 시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
정서 및 사회성	정서 및 행동 장애	-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살 미만에서는 스마트기기를 보여주지 않도록 권장 - 영유아기에 전자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추후 삶의 질(또래 관계, 정서문제, 자존감, 가족기능 등)이 저하 - 유아기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외부 세계와 또래에 대한 관심 증가 - 이 시기에 친사회적 행동과 책임감 등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연령 - 실제 취학을 앞둔 연령의 아이들에게 향후 집단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상담 필요
구강	치은비대, 치석, 충치 등	- 유치시기에 발생한 치아우식증은 이후 영구치에도 영향 - 소아치과 내원환자 26.5%에서 치아발생이상 관찰

* 기존 간접흡연은 영아돌연사증후군에 포함

붙임 2

전국 어린이집(2015.7월)·유치원(2020.7월)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

1. 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수요자(보호자, 어린이집)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 영유아 검진결과서 개별 제출 및 서면관리(보호자, 어린이집, 유치원) → 전산연계
 ※ 연계정보 활용 → 검진시기 알람서비스(보호자, 어린이집, 유치원)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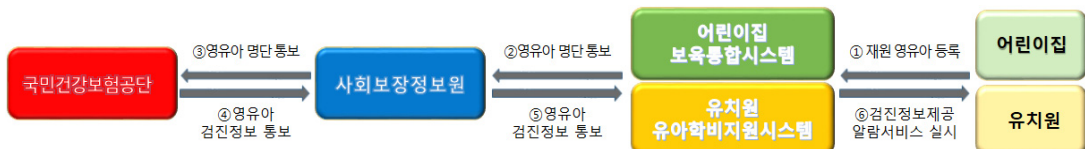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신규입소 예정 이동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당해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입소(입학)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출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3. 연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검진결과 활용 동의자에 한함)
 - ※ (월평균) 어린이집 37천 개소, 유치원(88천개소) 영유아 검진정보 공유

4.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공유 시스템 구성도



3-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중간 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추진경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10.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차상위층까지 확대('11.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13.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19.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22.1.1)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80%이하까지 확대('23.1.1)

4 사업개요

- 예산(국고) : 836백만원
- 사업주체 : 시·군·구 보건소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도가 시·군·구별 정밀검사비 집행액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일괄 집행 가능
-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은

-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평가를 실시함
-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함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붙임4) 참고)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지원 참고사항

- ①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각각의 다른 검사를 위해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예시) 3차 검진 시 심화평가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 검진에서 다시 심화평가
권고판정 시 정밀검사비 지원
-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범
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예시) 대근육, 언어, 인지 영역 심화평가 권고 판정 시 대상자의 지원금액범위내에서 각각의 검사비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
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
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5 기관별 역할분담**가. 보건복지부**

-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사업안내 개발 및 시달
-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종합 평가 등

나. 시·도

- 검사기관 지정·관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예산 집행 및 결산
- 사업 홍보 및 지원실적 관리, 보건복지부 보고

다. 시·군·구 보건소

- 예방접종, 진료, 검진 등으로 내원하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사업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의뢰서” 발급
- 검사기관 안내
- 정밀검사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자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중 발달지연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붙임1, 2>
 - ※ 보호자가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발달지연 의심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시 서비스 신청 가능
- 사업홍보 및 지원실적 관리, 시·도 보고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중 정보 제공 동의자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진결과 등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검진기관 교육 시 동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및 열람서비스 제공
 - 영유아건강검진표(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정보 수록·발송
 - “정밀검사 안내문”에 공단 앱(The건강보험)과 홈페이지를 통한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방법 안내 및 링크 QR코드 제공
- ※ 시·도 및 지자체, 영유아 관련 학회, 의료기관 등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등록 및 정보수정 요청 시 즉시 반영

마. 검사기관

- 발달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지정 검사기관) 보건소에 검사비용 청구

6 사업수행절차

가.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시행

나. 발달 정밀진단 검사기관 지정 및 사업안내

- (시·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 소아정신 포함), 정신건강 의학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등 발달 정밀검사가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발달 정밀검사 기관”으로 지정. 단, 발달 정밀검사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함.
 -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은 <붙임 3>참조
 -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달 정밀검사가 가능한 의료 기관은 가급적 발달 정밀검사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접근성을 감안 하여 인접 시·도의 의료기관도 지정 가능
- (보건소)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지정기관으로 안내하고, 지정 검사 기관에서는 직접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정보는 시·도 및 영유아 관련 학회,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 받아 공단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시·도 및 지자체에서는 관할지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역본부 및 본부 건강관리실)에 통보

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대상자 선정기준

①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발달평가결과, 소견 및 조치 사항(건본)	
발달 평가 결과	☐ 양호 ☒ 추적검사 권장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인지 ☐ 언어 ☐ 사회성 ☐ 자조 ☒ 심화평가 권고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인지 ☒ 언어 ☒ 사회성 ☐ 자조 [추가 질문 관련 ☐ 언어발달(L) ☐ 사회정발달(S)]
종합판정	☐ 지속관리 필요
소견 및 조치사항	☒ 양호 ☐ 주의 ☐ 정밀평가 필요 ☐ 지속관리 필요 신체검진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사회성, 언어영역의 발달이 늦은 편으로, 이에 대한 추적검사를 권장. 발달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밀검사비지원 대상 여부를 관할 보건소 또는 공단(1588-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검진기간은 2023.7.10.부터 2023. 12.31.까지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중 정보제공동의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②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급여) 포함)인 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선정·안내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적용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적용
 - 기타 위 모든 기준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을 경우에 가장 최근 2년 내 보험료 중 가장 낮은 산정금액 적용
-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

보험료 적용기준

- 1)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7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2.12.31.이전인 영유아
- 2)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3.1.1.이후인 영유아

2) 대상자 관리

- ① (대상자 통보) 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정보제공 동의자)의 명단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

② (사업안내)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발달 정밀검사 지원사업 안내(유선 및 우편) 및 방문신청자에 대하여 “〈서식1〉 의뢰서” 발급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가능

* 시스템 서식 준비중으로 개발 전까지 이전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및 의뢰서 발급(추후 공문 통보)

* 확인서 고유번호 : 지역번호-보건소명-일련번호 형식으로 구성

- 지역번호 :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 (공단)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붙임5〉정밀검사 안내문” 발송(우편 및 전자문서)

나. 발달 정밀검사 시행

구분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보건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서식 1〉 의뢰서” 발급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붙임5〉정밀 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서식1〉의뢰서 (보건소 발급), 지원대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 (공단 발송)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정밀검사 의료기관	검사 전 반드시 보건소 의뢰서, 의료급여증, 정밀검사 안내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통해 검사 필요 영역 확인 - 정밀검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발급 - 발달 지연 아동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포함 ※ 동 사업에는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안내	검사 전 반드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통해 검사 필요 영역 확인

검사기관에서 발달전문 검사기관으로 정밀검사 의뢰 시

- 검사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2〉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의뢰 기관에 통보
- 검사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서식3〉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다.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 및 지급

1) 정밀검사를 의뢰한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지원대상자를 검사 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 5일 이내 청구

○ 증빙서류

- 〈서식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서식3〉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서식3〉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진료비 영수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2)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전문검사 의뢰 시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 <서식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 <붙임5>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 <서식3>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서식3>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서식2>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3) 보건소

- 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 및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
 - 청구내용을 확인·검토 후 지원결정액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자 및 검사기관의 은행계좌로 지급
- 공단 발송 “정밀검사 안내문” 미수령 또는 분실 등으로 자격확인 필요 시, 지역보건의로 정보시스템 확인 또는 “1)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확인 또는 공단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 ※ “<서식 1> 의뢰서” 및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 안내문”을 받지 않고 정밀검사를 받았더라도 소득 기준과 검진결과 지원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밀검사비 지원 가능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서류

■ 소득 확인

-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별도 확인서류 없음
- 2)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 안내문” 소지자(건강보험료 80%이하)
: 별도 확인서류 없음
-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단 안내문 미소지자
 -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https://pr.share.go.kr>, e-하나로 민원) 등으로 자격 확인
 -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 주민생활지원센터 의뢰 등
 - ③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하고, “건강보험증”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 (E), (F)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④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속한 건강보험(지역·직장)의 기준 보험료만 확인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있는 경우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 건강보험증(지원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확인서류 없음
-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 검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 ※ 다음연도 이월지급,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 시·도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월 1회 주기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 변경
- 지원대상자가 전출지 보건소에 정밀검사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검토·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 필요한 구비서류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 간 FAX 전송 등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라. 사후관리

- 보건소는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붙임1, 2>

마. 실적보고 등 사업관리

1) 실적 보고

- 시·군·구 보건소는 지원실적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 매년 사업종료 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서식5> 양식으로 지원실적 보고

2) 홍보·교육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검진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설 등 관련 유관기관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 대상자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보호자 관리를 통해 사업 수행

【사업수행 절차도】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사업계획 수립 및 검진(의료)기관 선정	시·도	•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 관할 지역 내 정밀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정밀검사 기관 으로 지정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80%이하인 자 명단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송(동의자에 한함)
사업안내	시·도	•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 관할 지역 내 정밀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정밀검사 기관 으로 지정
사업안내 및 홍보	시·도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 및 보건소) 유선 및 우편물 발송 등 관할 지역 사업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 (공단)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방문 신청자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대상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 지 참 검사기관 방문 검사 실시
발달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발달 정밀검사 의뢰	검사기관 → 발달 전문 검사기관	· (검사기관) 필요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전문 검사기관)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하에 정밀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검사기관 통보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	• (지정) 검사비 → 보건소*(또는 보호자 청구) * 보건소의 검사 의뢰서 있는 경우에 한함 • (비지정) 검사비 → 보호자 청구
검사비 지급	보건소	• 검사결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검사비 지급
사후관리	보건소	• 발달 지연 의심 영유아에 대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 사업 연계
지원현황 보고	시·도 및 보건소	• 지원실적 보고 ※ 보건소→시·도→복지부

붙임 1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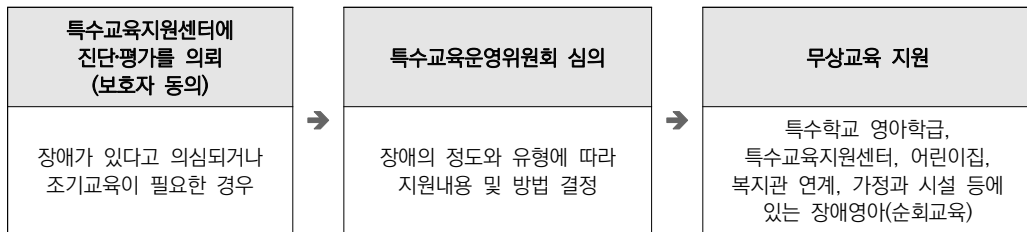
구분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목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행동 발달 재활치료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 서비스제공으로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만6세미만 일반아동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일반아동의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 만18세 이하 일반 아동 - 문제행동(ADHD)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의사진단서 및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 만6세이하 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아동 - 보건소장 및 보육시설장이 추천한 아동
제공서비스	언어, 인지,놀이, 미술, 음악, 청능,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언어, 인지,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등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 중재 서비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금액/회	월22만원/8회 (지역별/기관별 상이)	월18만원/월4회(주1회)	월20만원/주2회
제공기간	지원대상일까지 (일반 만6세, 장애 만18세)	2년(1년+재판정1회) 최대 2년	12개월
본인부담금	면제~8만원	1만8천원~5만4천원	2만원~4만원
신청기관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발달재활의뢰서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 신분증	의사진단서 또는 추천서/소견서	- 보호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영유아 발달평가결과 - 소견서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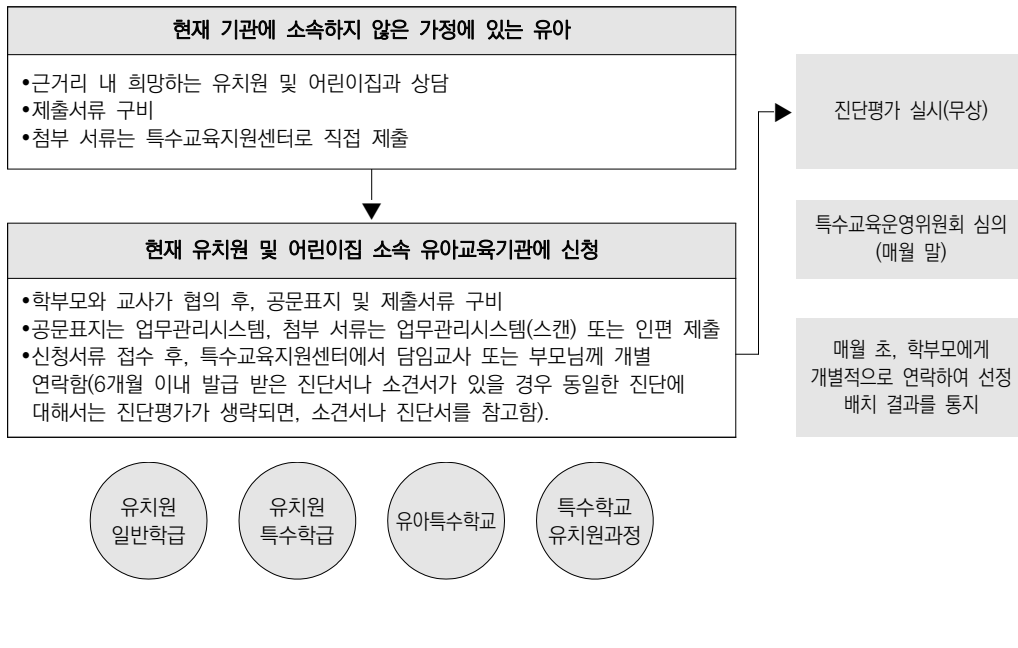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안내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한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촉진을 목적으로, 장애 및 장애가 의심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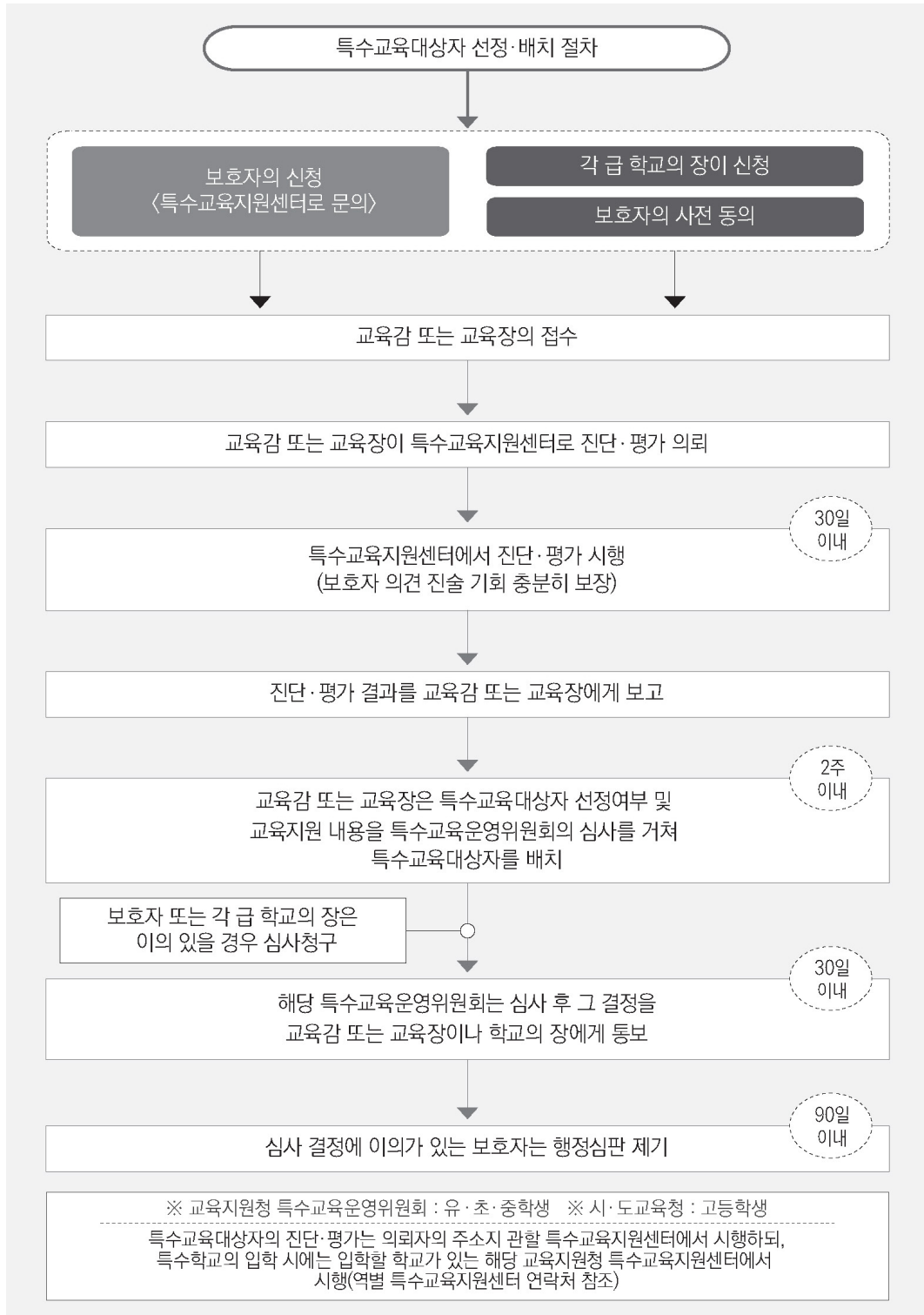
I 장애영아 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II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 기관유형별 내용

구분	교육청 바우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만 0~12세의 영아~초등학생 대상 보육 실시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는 물론 비장애아동도 일정 비율 이내에 함께 보육, 치료지원 실시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통합 보육 실시
유아특수학교	○ 만 0~5세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치료지원 실시
특수학교 유치원	○ 만 3~5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수학교에 편성된 유치원 과정의 학급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제도, 치료 지원을 받음
유치원 (통합 유치원, 일반 유치원)	○ 만 3세 이상의 유아 교육 ○ 유치원 일반학급에 통합하거나 특수학급에서 교육 ○ 각 시·도 교육청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	○ 만 3세 미만 특수 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영아를 대상으로 함 ○ 센터 방문 교육, 통신 교육, 체험 교육, 1대 1 수업 및 그룹 형태의 수업 진행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구분	교육청 바우처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3세 미만 장애영아 ○ 유·초·중·고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영역	언어, 물리, 작업, 청능, 음악, 미술, 행동, 감각통합, 심리운동
선정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서비스금액/회	월12만원이내/4회
제공기간	지원 대상일까지
본인부담금	1일 3만원 지원금액 초과액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
신청기관	교육청,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방법	교육청,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598, 624, 027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38길 27 서울묵동초등학교 內서관건물 1층	02-433-4327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6길 20 서울응암초등학교	02-715-0953, 717-4404~5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본원)	유초등(영일초등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218 서울영일초등학교 신관4층	02-861~3-2416
		중등(영등포평생학습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당산동 121-22) 영등포평생학습관內1층	02-2038-2700~3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6길 42 산상중학교	02-956-1038~1040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0길 13 서울충무초등학교 內1층	02-2278-6587~8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6길 8 서울중대초등학교	02-414-2634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5길 90, 체육관동 1층 서울 등원초등학교	02-3665-0806~7 02-3665-0812~0813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28	02-459-1013, 1015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후관 2층	02-833-2895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8길 6 서울행당초등학교 內(후문쪽)	02-2292-6411~7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08 송곡중학교 별관 1층	02-911-1078, 1447~9
부산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63번길44	051-6053-721
대구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새방로 62 대구세명학교	053-231-9650~2
인천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304(인천인혜학교 신관 1층)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인천청선학교 5층)	032-550-1711~7 032-3408-543~5
광주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322번길 6	062-717-6800
대전	대전특수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6	042-610-1000
울산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594	052-255-6600
경기	경기특수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031-820-0776
강원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3번길 6-1 강원도교육연구원	033-250-2541
충북	충북특수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	043-219-6100
충남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041-640-7624
전북	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063-239-3354
경북	경북특수교육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054-805-3272
경남	경남특수교육지원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	055-716-1780
제주	제주특수교육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064-710-0323
세종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음로 116, 2층	044-320-5100

붙임 3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장애인의 종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총 15가지 유형)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붙임 4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예시)

○ 발달장애 확진검사 1차 항목 (예시)

발달장애 정밀평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검사명
인지 평가 (기본 battery)	나627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나620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너701다	FY753060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작업 평가	노694	FZ694	덴버발달검사
	너771가	EY773	일상생활동작검사(ADL:소아)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소아)

○ 발달장애 확진 검사방법 (예시)

지능 검사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 검사 3판(WISC-III)
발달 검사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 검사
언어평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 검사(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그림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문장이해력 검사
	그림자음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자폐 검사
	주의 집중력 검사
작업치료 평가	발달성 시지각 검사(DTV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감각 통합 평가

○ 검사방법 (예시)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나-610나	F610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나-620가	F6201	지능검사
나-620나	F6202	그림지능검사
나-620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나-621바	F6215	그림검사(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그림검사)
나-624	F6240	벤더도형검사
너-701다	FY753060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붙임 5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예시) * 공단 발송

우편 안내문

관리번호:

안내문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In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건강(위튼튼)님 귀하

최근 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검사 결과,
심화평가가 권고로 확인되었습니다. 발달 관련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정밀진단검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보이스아이코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판정결과]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빠른 수준 혹은 또래 수준 성장 발달 상태	지속적으로 관찰 후 재검사 필요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 관련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정밀진단검사가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는 보호자가 작성한 답변 내용에 따라 판정된 것입니다.

※ 아이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신중하게 관찰하여 작성한 경우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 판정을 이미 받은 자는 정밀검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 자녀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안내문을 지참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으세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22년(하위 70%), 23년(하위 80%) : 최대 20만원
	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항목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영유아 검진결과 및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방법]

The 건강보험 (앱설치-로그인)	영유아 검진결과	전체메뉴 → 건강N →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조회
공동/금융/간병/건강 보험인증서	정밀검사 의료기관	전체메뉴 → 건강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기관

※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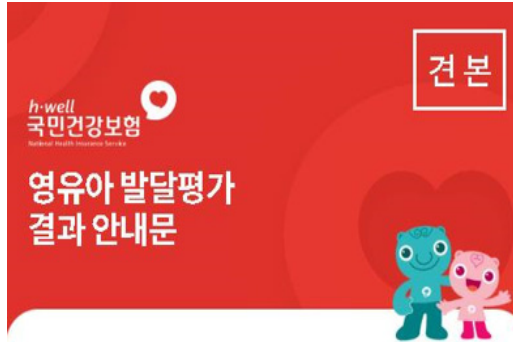
[12 Foreign languages]

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00 보건소 ☎ 000)-0000-0000

기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하시고 안내문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MS 안내문

<1면>



장건강(위튼튼) 님 귀하

· 관리번호 : 702-2022-00000015

최근 귀하의 자녀가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확인되었습니다.
발달 관련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정밀진단검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판정결과



양호	빠른 수준 혹은 또래 수준 성장발달 상태
추적검사 요망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재검사 필요
심화평가 권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 관련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정밀진단검사가 필요

- ※ 발달선별검사(K-DST)는 **보호자가 작성한 결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 ※ 아이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신중하게 관찰하여 작성한 경우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영유아 **발달장애 판정을 이미 받은 자**는 정밀검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귀자녀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80%: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 본 안내문은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내문 수령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참고)

※ 안내시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이 외에 추가 지정병원 등은 파악되는데로 추가하여 안내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1		서울	강남구	밝은미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		서울	강남구	소은희마인드피아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		서울	강남구	신석호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5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6		서울	강남구	연세소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7		서울	강남구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8		서울	강남구	힐링유의원	정신건강의학과
9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		서울	강동구	사과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	지정	서울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2		서울	강동구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	지정	서울	강북구	같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5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16		서울	강북구	사랑샘터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7		서울	강서구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18		서울	강서구	마곡웰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9		서울	강서구	백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0		서울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1		서울	관악구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2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3		서울	광진구	서울우리아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4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5		서울	구로구	백상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6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27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8		서울	노원구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9		서울	노원구	서울아이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30		서울	노원구	아이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31		서울	노원구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32		서울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3		서울	노원구	전성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34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5	지정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6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7	지정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8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39		서울	마포구	삼성사과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0		서울	마포구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1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42		서울	마포구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3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44		서울	서대문구	연세밝은맘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5		서울	서대문구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6		서울	서초구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7		서울	서초구	서동수위드어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48	지정	서울	서초구	서울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49		서울	서초구	쑥쑥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50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51		서울	서초구	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52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53	지정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54		서울	성동구	해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55		서울	성북구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56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57		서울	성북구	준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58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59		서울	송파구	김선미신경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0		서울	송파구	닥터진힐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1		서울	송파구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2		서울	송파구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3		서울	송파구	위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4		서울	송파구	잠실아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5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66		서울	송파구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7		서울	양천구	나인마음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8		서울	양천구	마음의 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69		서울	양천구	송주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70		서울	양천구	연세누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71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2		서울	영등포구	가족사랑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73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4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5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6		서울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7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재활의학과
78	지정	서울	은평구	지앤선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79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80	지정	서울	종로구	마음공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81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82		서울	종로구	연세반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83		서울	종로구	임계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84		서울	중랑구	마인드닥터주니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85	지정	서울	중랑구	서울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86		부산	강서구	행복한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87		부산	금정구	금정병원	소아청소년과
88	지정	부산	금정구	백용운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89		부산	남구	부산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0	지정	부산	동래구	강병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91	지정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2	지정	부산	부산진구	아이원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93	지정	부산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4		부산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5		부산	사상구	우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96		부산	사상구	큰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7		부산	사하구	부산맘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98		부산	서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99	지정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0		부산	수영구	아이들의꿈재활의원	재활의학과
101	지정	부산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2	지정	부산	연제구	라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03		부산	연제구	연세아이(i)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04		부산	해운대구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05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6	지정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7	지정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8	지정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09	지정	대구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10		대구	북구	김지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1		대구	북구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2	지정	대구	북구	철곡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13		대구	수성구	정성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4		대구	수성구	정재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5	지정	대구	수성구	제이에스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116		대구	중구	가족사랑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7	지정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18		대구	중구	주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19	지정	인천	남동구	미추홀병원	재활의학과
120	지정	인천	남동구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121	지정	인천	남동구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22	지정	인천	남동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123	지정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24	지정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25	지정	인천	서구	원당연세메디칼의원	소아청소년과
126	지정	인천	연수구	라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27	지정	인천	연수구	해솔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28	지정	인천	중구	스타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29	지정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30	지정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31	지정	광주	남구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2	지정	광주	동구	아이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3	지정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34	지정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35	지정	광주	서구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6	지정	광주	서구	정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7	지정	대전	서구	다빈치병원	재활의학과
138	지정	대전	서구	다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39	지정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0	지정	대전	서구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1	지정	대전	서구	휴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42	지정	대전	유성구	봉키병원	소아청소년과
143	지정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4	지정	대전	중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5	지정	울산	동구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46		울산	중구	아주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147		울산	중구	청남의료재단 세민에스요양병원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148	지정	세종		세종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49	지정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50	지정	세종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51	지정	세종		이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52	지정	경기	덕양구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53	지정	경기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54	지정	경기	일산동구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55	지정	경기	일산동구	연세이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56	지정	경기	일산동구	연세최의검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57	지정	경기	일산동구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58	지정	경기	일산서구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59	지정	경기	일산서구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60	지정	경기	일산서구	청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61	지정	경기	구리시	예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62	지정	경기	구리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63	지정	경기	남양주시	같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64	지정	경기	남양주시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소아청소년과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165	지정	경기	남양주시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소아청소년과
166	지정	경기	부천시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67	지정	경기	부천시	두드림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68	지정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69	지정	경기	분당구	W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70	지정	경기	분당구	대진의료재단 분당재생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71	지정	경기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72	지정	경기	분당구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73	지정	경기	분당구	소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74	지정	경기	분당구	연세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75	지정	경기	분당구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76	지정	경기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77	지정	경기	권선구	제이엠베스트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78	지정	경기	권선구	프라임메디컬의원	소아청소년과
179	지정	경기	영통구	강지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0	지정	경기	영통구	서울아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1	지정	경기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82	지정	경기	장안구	연세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3	지정	경기	장안구	좋은마음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4	지정	경기	팔달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85	지정	경기	팔달구	해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6	지정	경기	단원구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87	지정	경기	동안구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8	지정	경기	동안구	삼성해밀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89	지정	경기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90	지정	경기	동안구	햇살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91	지정	경기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92	지정	경기	오산시	서울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193	지정	경기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94	지정	경기	수지구	김유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95	지정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96	지정	경기	의정부시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97	지정	경기	의정부시	서울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98	지정	경기	평택시	밝은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199	지정	경기	평택시	연세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00	지정	경기	평택시	성세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201	지정	경기	하남시	마일스톤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202	지정	경기	하남시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03	지정	경기	화성시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04	지정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05	지정	경기	화성시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06	지정	강원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순번	구분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207		강원	원주시	다운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208	지정	강원	원주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09		강원	원주시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10	지정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11		강원	춘천시	춘천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12	지정	충북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13		충북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14		충북	흥덕구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15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16		충북	충주시	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17		충남	아산시	바른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218	지정	충남	아산시	아이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19	지정	충남	동남구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0	지정	충남	동남구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1	지정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2	지정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3		전북	덕진구	김태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24	지정	전북	덕진구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5		전북	완산구	다솜신경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26	지정	전북	완산구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27	지정	전북	완산구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28	지정	전남	광양시	다나소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229	지정	전남	광양시	허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30	지정	전남	순천시	담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31	지정	전남	여수시	여수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32	지정	전남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233	지정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34	지정	경북	경주시	한빛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235	지정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36	지정	경남	양산시	양산서울요양병원	재활의학과
237	지정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38	지정	경남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39	지정	경남	성산구	CNA서울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240	지정	경남	성산구	상남아이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241	지정	경남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42	지정	경남	성산구	창원아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43		제주	제주시	서울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244	지정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245		제주	제주시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발달 정밀 평가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안내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http://nhis.or.kr)에 접속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The Evaluation of a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

발달 정밀 평가 안내



- 전문기관에 의뢰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 혈액검사나 뇌영상 검사도 하게 되나요?
- 진단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전문가 진단 후 재평가가 더 필요할까요?

발달 정밀 평가 안내



전문기관에 의뢰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발달선별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의
의미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요한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차진료기관의 의료진은 보통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되므로, 미리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달전문
기관방문

전문기관에 의뢰되면, 우선 해당 전문의를 만나 진찰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동의 발달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진단적으로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정밀 진단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발달지연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야 하는 검사는
발달 정밀평가
검사와

일단 전문가에 의해 발달지연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발달 정밀평가와 원인 정밀평가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발달 정밀평가는 신경발달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일부는 진찰만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발달검사나 심리검사 등 표준화된 진단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달정밀평가의 목적은, 신경발달질환 중 어디에 속하며, 이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발달정밀평가에서는 주로 영유아의 운동, 언어, 지능과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자조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심리검사는 여기에 추가로 인지, 주의집중력, 정서 등을 평가합니다. 검사는 크게 아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아동이 무엇인가를 해 보도록 시키는 검사, 그리고 보호자에게 아동의 발달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검사들로 구성됩니다.

발달 정밀평가 검사의 종류는 평가해야 하는 발달 영역, 아동의 연령, 진료과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개별검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전문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사들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준화 과정을 거친 도구이기에, 도구의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한 염려 없이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검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혈액검사나 뇌영상 검사도 하게 되나요?

원인질환을
찾기위한 검사

발달 정밀평가 이후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검사나 MRI, CT 같은 뇌영상 검사, 뇌파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을 권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뇌영상 검사는 뇌의 모양과 구조를 보기 위해, 뇌파는 뇌의 활성도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는 근육의 생리적 기능과 신경 전달 능력을 보기 위해 시행하며 이외에도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염색체, 유전자, 대사이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추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검사들 통해 발달장애에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 MRI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그 영상에 진단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달지연의 원인이 혹시라도 선천성 뇌기형이나 뇌 종괴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혈액검사나 뇌영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더 하는 이유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이상을 보이는 아동의 10~30% 정도에서는 위와 같은 검사들 통해 원인질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발달지연에 대한 치료 이전에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검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신경발달질환만 진단된 상태에서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가 즉시 원인 정밀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치료를 미루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과 치료 방법은 아동이 가진 발달문제와 정도와 영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영유아의 발달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치료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진단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들을 처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기법이 발달문제 치료에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중적으로 광고되고 있는 치료 기법은 이론적, 실험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 부족한 분들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치료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인간의 뇌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개조될 수 있는 능력인 가소성(plasticity)이 있는데, 소아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 가소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출생 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발달합니다. 이 때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감각과 운동의 '경험'입니다.

뇌의 변화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적절한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뇌 발달이 경해진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천적이나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각종 뇌질환, 혹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뇌 발달 이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통한 경험의 제공은, 뇌 가소성을 이용하여 발달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여러 종류의 치료는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치료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뇌세포간 연결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 뇌 발달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치료들은 가능한 조기에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며, 각 아동에 따라 필요한 치료의 종류와 강도는 달라지므로 아동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진단 후 재평가가 더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일차 진단 이후에도 아동의 발달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임상 양상도 달라지고 필요한 치료도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문가의 진료와 이에 따른 치료 계획 수정을 위한 재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보통 6개월~1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달을 촉진
시키는 조기치료**

발달 정밀 평가 안내

본 자료는 사전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포털(<http://sis.nhis.or.kr>)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식 1〉 보건소에서 정밀검사 기관으로 대상자 검사 의뢰 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고유번호 :)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 상 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기초수급(주거·생계급여)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연락처	
보건소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위 영유아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로 귀 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보건소장 : 인 (검사기관) 귀하						
발달정밀검사 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사본 1부						

〈서식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검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인지검사			
	언어검사			
	작업검사			
	...			
	...			
	...			
담당의사소견 (재활치료 필요 여부)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검사결과	☐ 양호 ☐ 이상 (병명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등 예견되는 장애유형 기재			
진 단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검사 의료기관명 (인)				
※ 비 고 1. 통보서 발행 시 검사 받는 자가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부합니다. 3. 담당의사의 소견란에 검사항목 및 장애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서식 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년 월 일		발달 정밀검사 일자		년 월 일	
대 상 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기초수급(주거·생계급여)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대리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의료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검사기관 (의뢰 시)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청 구 금 액		₩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2. 진료비 영수증.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4. 입금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서식 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대상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유아 건강검진 일자		년	월	일	발달 정밀검사 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달정밀검사비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청 구 금 액		₩ (원)				
검 사 건 수		건		1회 검사비용(평균)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2. 진료비 영수증. 3. 입금통장 사본. 4.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발행).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서식 6〉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실적 보고

1. 검사비 지원현황

○ 지원현황

(단위: 명, %, 원)

구 분		지원대상 (A)	지원실적		예산(국비)			
			지원인원 (B)	지원율 (C)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D)	집행잔액
시 도	합계							
	의료급여수급권자				/	/	/	/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주거·생계)						
		차상위						
		건보80%이하						

- 1) 지원대상(A)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및 보건소 발굴 지원대상자
- 2) 지원인원(B) :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인원
- 3) 지원율(C) : 지원인원(B)/지원대상(A)*100
- 4) 집행률(D) : 집행액/교부액*100

2. 지원 상세내역

○ 지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48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60개월 초과~
시 도	계							
	남							
	여							

* 정밀검사 시점 연령

○ 검사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시 도	합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주거·생계)				
		차상위				
		건보80%이하				

○ 검사결과

(단위 : 명)

구분		총계 (A+B)	정상 (A)	발달지연 의심 영역									
				계(B)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시 도	계												
	남												
	여												

※ 발달장애 계(B) : 1명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도 1명으로 기재

※ 발달장애 검사결과는 해당 장애 항목별로 중복 표기 가능

3. 정밀검사기관 현황

○ 정밀검사기관 지정 현황 (전년도 12월말 기준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전문의	비고(지정일)

○ 정밀검사기관별 실적

(단위 : 건)

시도	기관명	자격구분		검사기관 청구 건	지원대상자 청구 건 (사후정산)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주거·생계급여) /차상위	건보가입자			

CHAPTER 0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1 목 적

- 2023년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신청·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시·도별 예산 및 교부신청

가. 시·도별 예산현황 : ‘붙임 1’ 참조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e-호조 시스템에 보조금 확정예산을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가. 사업별 검진비 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국비 기준)	국 고 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국가건강검진 사업 운영	계	9,58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포함)	6,621	서울 50%, 광역시 및 시·도 80%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로 예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617			시·군·구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836			
	의료급여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54			
	건강검진사업 운영	1,258	직접수행, 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비 예탁
 - 동 사업 예산은 수검률과 관계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업무위탁수수료는 대상자 확정, 검진표 제작 및 발송 등을 위한 업무수행 경비로 집행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교부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위탁 MOU 체결
 - 예탁방법 : 보건소 예탁 → 공단본부 → 지급(건강검진기관) → 정산 → 시·도
 - 예탁금 현황(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잔액)은 분기별 공단에서 시·도로 통보하며, 사업 종료 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
 - ※ 건강검진비용과 업무위탁수수료 예탁 시 공단 지정계좌는 별도로 운영
 - ※ 공단 예탁금 관리 체계 : '붙임 3' 참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각 시·군·구 보건소에 사업운영비 지원
 -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우편, 전화 등 수검 독려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자료 제작 경비 등으로 집행하되, 해당 사업비는 공단 예탁 불가

나.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 내용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를 다음연도 3월초까지 보고
 - 보건소 자체 수행예산(사업운영비 등)은 회계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정산
 - 건보공단에 예탁한 검진비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보공단의 예탁금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보고
 - ※ 2022도 검진비 예탁금은 2023년 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보고

붙임9

2023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현황

1. 세부사업명 :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258	11,383,206	8,328,000	3,055,206
서울	25	2,595,190	1,297,595	1,297,595
부산	16	926,593	741,274	185,319
대구	8	625,365	500,292	125,073
인천	10	711,780	569,423	142,357
광주	5	481,004	384,803	96,201
대전	5	393,529	314,823	78,706
울산	5	179,792	143,833	35,959
세종	1	40,598	32,478	8,120
경기	48	1,736,330	1,389,063	347,267
강원	18	383,712	306,969	76,743
충북	14	341,795	273,436	68,359
충남	16	411,577	329,261	82,316
전북	14	631,939	505,550	126,389
전남	22	488,115	390,492	97,623
경북	25	602,594	482,075	120,519
경남	20	688,922	551,137	137,785
제주	6	144,371	115,496	28,875

1)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258	9,069,567	6,621,000	2,448,567
서울	25	2,115,504	1,057,752	1,057,752
부산	16	779,248	623,398	155,850
대구	8	522,846	418,277	104,569
인천	10	554,433	443,546	110,887
광주	5	401,931	321,545	80,386
대전	5	321,050	256,840	64,210
울산	5	130,319	104,255	26,064
세종	1	26,533	21,226	5,307
경기	48	1,285,263	1,028,210	257,053
강원	18	305,583	244,466	61,117
충북	14	267,666	214,133	53,533
충남	16	312,133	249,706	62,427
전북	14	538,818	431,054	107,764
전남	22	390,111	312,089	78,022
경북	25	473,434	378,747	94,687
경남	20	544,165	435,332	108,833
제주	6	100,530	80,424	20,106

2)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843,269	617,000	226,269
서울	192,044	96,022	96,022
부산	56,691	45,353	11,338
대구	40,858	32,686	8,172
인천	69,444	55,555	13,889
광주	45,093	36,074	9,019
대전	31,281	25,025	6,256
울산	11,694	9,355	2,339
세종	3,129	2,503	626
경기	130,323	104,258	26,065
강원	23,340	18,672	4,668
충북	27,190	21,752	5,438
충남	33,591	26,873	6,718
전북	41,243	32,994	8,249
전남	34,986	27,989	6,997
경북	43,890	35,112	8,778
경남	43,024	34,419	8,605
제주	15,448	12,358	3,090

3) 내역사업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사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1,134,120	836,000	298,120
서울	237,642	118,821	118,821
부산	70,654	56,523	14,131
대구	51,661	41,329	10,332
인천	75,403	60,322	15,081
광주	27,730	22,184	5,546
대전	34,948	27,958	6,990
울산	31,529	25,223	6,306
세종	9,686	7,749	1,937
경기	263,244	210,595	52,649
강원	32,289	25,831	6,458
충북	29,439	23,551	5,888
충남	47,103	37,682	9,421
전북	34,378	27,502	6,876
전남	35,518	28,414	7,104
경북	55,270	44,216	11,054
경남	76,733	61,386	15,347
제주	20,893	16,714	4,179

4)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사·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336,250	254,000	82,250
서울	50,000	25,000	25,000
부산	20,000	16,000	4,000
대구	10,000	8,000	2,000
인천	12,500	10,000	2,500
광주	6,250	5,000	1,250
대전	6,250	5,000	1,250
울산	6,250	5,000	1,250
세종	1,250	1,000	250
경기	57,500	46,000	11,500
강원	22,500	18,000	4,500
충북	17,500	14,000	3,500
충남	18,750	15,000	3,750
전북	17,500	14,000	3,500
전남	27,500	22,000	5,500
경북	30,000	24,000	6,000
경남	25,000	20,000	5,000
제주	7,500	6,000	1,500

붙임 10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양식

1)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단위 : 원)

시·도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만성질환예방관리) (코드 : 3334-307-330-01)							담당자 /부서 /연락처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이자반납액
					계	이월액	불용액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도	소계 (A+B+C+D)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A)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시·도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B)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C)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시·도	건강검진 사업운영(D)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지방비 정산

(단위 : 원)

시·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시도		합계	시도		합계	시도
시 도 명	합계									
	일반건강검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검진사업운영비									

붙임 1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예탁금 관리(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1. 예탁 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2.12.30)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에 예탁(제12조제3항)

2. 목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관리
 - ※ 위탁 업무 : 대상자 확정, 건강검진표 제작 및 발송, 건강검진 비용 지급 등

3.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4. 예탁금(건강검진비) 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 분기 첫째 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 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를 공단의 지정된 수납계좌로 입금(예탁)
 -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 공단은 시·군·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에서 청구한 건강검진 비용을 관할 보건소별로 구분한 후, 보건소별로 건강검진기관에 비용 지급
-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 미지급현황을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송(월1회)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분기별 예탁 현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함으로써, 공단이 시·군·구별 실제 예탁금과 대조(對照)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검진비 지급, 미지급현황 및 홍보 관리비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 실적을 파악하여 건강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 : 다음연도 3월초까지 보고
 - 시·도는 예탁금이 부족하여 공단에 불입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탁 시 추가로 예탁하게 하고, 예탁금을 초과해서 불입한 시·군·구는 다음연도 예탁 시 초과 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예탁할 수 있도록 국고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최대한 예탁을 실시
 - 예탁금의 이자관리 :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 결산 시점에 정산하여, 배분금액을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에 반영
- * 배분 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5. 업무위탁수수료

- 보건복지부가 공단에 업무위탁수수료를 직접 지급

6. 예탁금 정산현황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CHAPTER 05

건강검진기관 지정 · 변경 · 지정취소 등

5-1. 건강검진기관 지정 · 변경 · 지정취소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5-1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 개요

가. 정의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 구분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됨
 - (암검진기관 구분)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으로 구분됨(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가.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 (국가건강검진 수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
- (검진기관 세부적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음
 - ※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 검진기관 중 일일 평균 검진인원 및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임상병리 분야와 방사선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주의 요구
 - ※ 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인력 장비 구분		예외 사항
임상 병리 분야	임상병리사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되나, 검진 의사가 역할을 대신해야 함.
	임상검사시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됨. 단, 임상병리사와 원심분리기는 갖추어야 함
	혈액검사장비	
영상 의학 분야	방사선사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됨. 단, 촬영을 검진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없어도 됨 ※ 조영검사와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반드시 방사선사가 있어야 함 ※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실시하는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 이상)은 반드시 방사선사가 있어야 함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방사선촬영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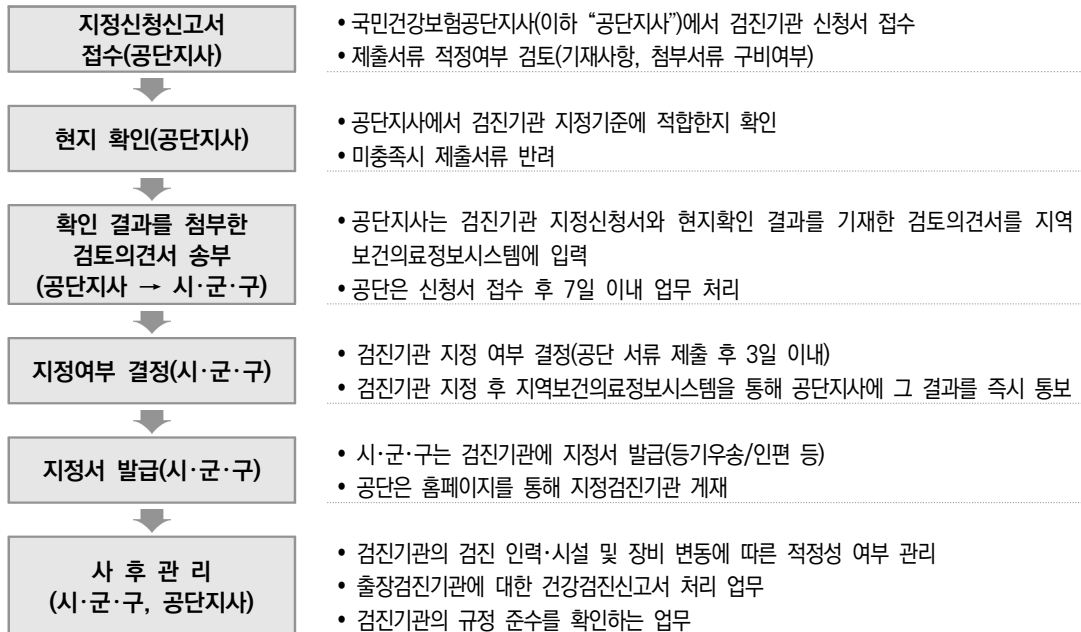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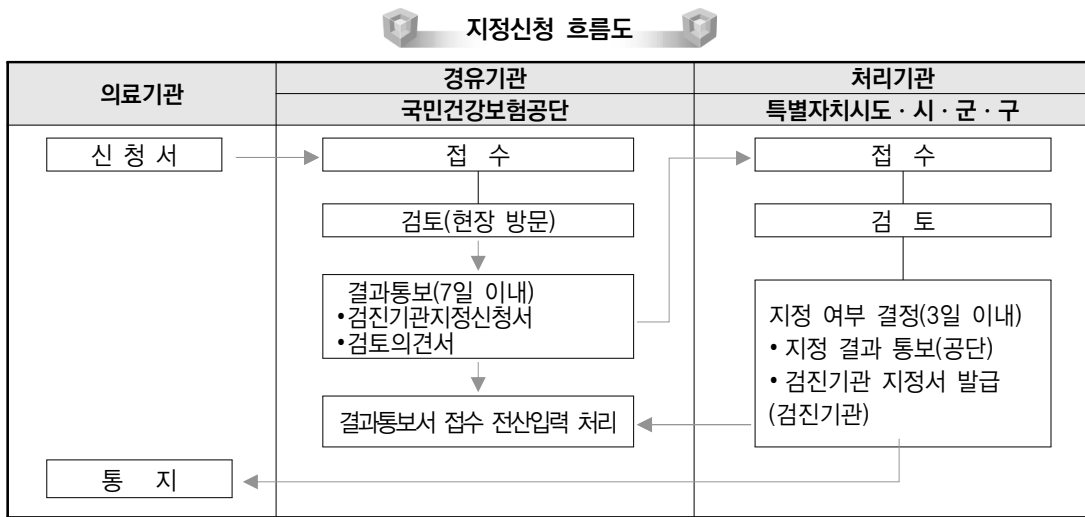
- (방사선 촬영장치 관련 특이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를 갖춘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 직접촬영장치만 인정

-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3 참조
 - (신청기관) 영유아건강검진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 한해 지정 신청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검진기관만이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자궁경부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일반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폐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종합병원인 경우만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동시 지정기관의 인력기준) 일반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
 - ※ 단, 방사선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위암, 대장암 검진기관의 실시 요건) 내시경장비 1대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영촬영검사는 선택사항으로 관전류 500mA 이상의 조영 촬영기기를 사용하되, 방사선사를 필수 인력으로 갖추어야 함
-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4 참조
 - 치과 병·의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함
 - (출장검진 범위)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과 읍·면·리 지역 및 섬·벽지지역(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보험료 경감고시 중 섬·벽지지역 참조)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한해 가능함(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출장검진 제한) 영유아검진기관과 유방암검진기관 또는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 *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

- (출장검진기관 검진차량)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차량으로 해당 장비와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구강 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기준)

나. 검진기관의 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아래를 참조



○ (신청자) 지정받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개설자(대표자)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추가 서류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일반검진, 유방암 검진, 조영촬영장치를 구비한 위암 및 대장암, 폐암 검진기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출장검진기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 5. 출장검진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1부(검진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만 제출) 6. 교육수료증(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 ※ 교육수료증은 공단 검진기관의 교육이수 명단 확인으로 갈음(별도 제출서류 없음) 7. 유방촬영기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유방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 8.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기관 :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장비 공동이용 계약서 (특정서식 없음) 9.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는 의원급 내원 검진기관 : '일일 수검건수 15건 미만'으로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협약서(특정 서식 없음)

○ (신청 접수)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 검진기관 관할 지역 공단지사 담당자(관할지사가 아닌 경우 신청서 이첩)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함

○ (지정요건 확인 : 공단지사)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함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함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1)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송부)함(공단지사 → 관할 보건소,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 ※ 검진기관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줄 수 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 처리기간 내 신청 철회를 요청할 경우, 공단은 검토·확인을 생략하고 반송조치 할 수 있음

- (검진기관 지정처리)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공단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공단의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함
 - 검진기관에는 검진기관 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낸 관할 공단지사에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검진기관에서 지정내용이 변경(검진종목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 등을 심사(기 지정받은 사항 심사 불필요), 지정서는 검진기관 당 하나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존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이 확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서를 재발급함
 - 공단은 보건소의 지정통보 관련사항을 전산 입력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보건소-공단지사 간 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검진기관 지정, 변경, 지정취소 업무는 행정 권한으로 행정기관인 시·군·구에서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검토·확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 시·군·구-공단지사 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붙임 4 참조)
 - 연계대상 업무: 검진기관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통보 등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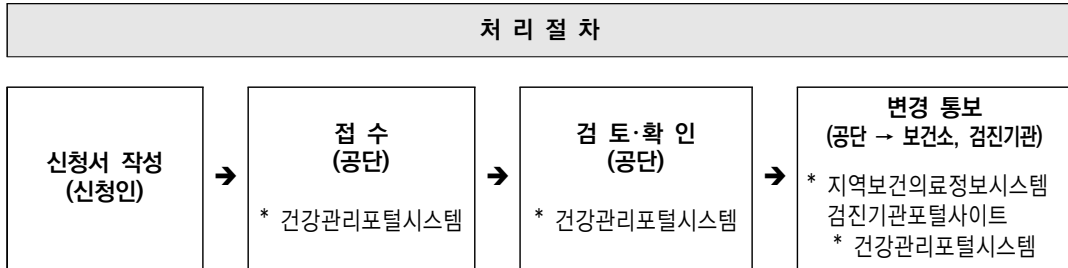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 '21.12.31) 적용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공단지사)
 - (변경요청 대상) 검진기관명,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등 검진기관 정보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공휴일 검진, 자체청구 프로그램 사용 등 검진기관 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변경요청 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적기에 신고된 경우에는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고 변경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음
 - ※ 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is.nhis.or.kr>)에서 변경 신청 및 변경내역 확인 가능
 -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게는 공단 검진기관 포털사이트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사항 처리 : 보건소)
 - 변경사항 중 의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대표자) 등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지정서를 고쳐 쓰거나 재발급함

변경신청 흐름도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련 : 시·군·구청장, 공단지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청문)에 따른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출장검진기관 확인 업무 포함), 검진 시행 및 비용청구의 사실 여부,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그 밖에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지정취소 종류) 검진기관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에서 자진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로 구분
-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2. 개설자가 사망한 때
 3. 의료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때
 4. 개설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5. 시·군·구를 달리하여 개설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6.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의원 ↔ 병원 등)
7.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때

※ 단, 검진기관이 지정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미 검진기관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권으로 지정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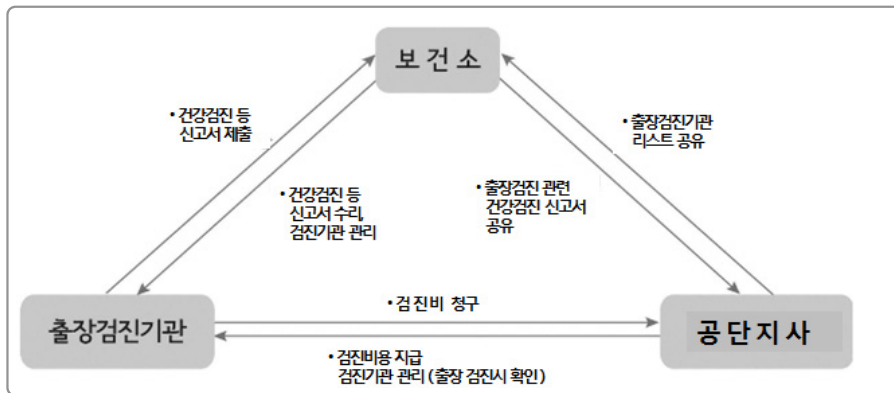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지정취소		변경신청
지정 기준 미달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부터 제3항 관련 별표 1부터 별표 5의 검진기관 지정기준 사항이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미달된 날부터 지정취소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검진기관 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1. 검진기관 명칭 2. 검진기관 개설자(대표자) 3. 검진기관 소재지 4. 검진 인력 5. 검진 시설 6. 검진 장비 7. 출장검진 차량 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비교2, 비교3에 따른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공동 이용 9. 공휴일검진 10. 기타 사항(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자체 검진기관,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근무시간 외 검진, 내부정도관리 실시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여부, 자체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의료 기관 폐업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2. 개설자가 사망한 때 3. 의료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때 4. 개설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5. 시·군·구를 달리하여 개설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6.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의원↔병원 등) 7.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때	
의료 기관 권리 변경	1. 동일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단독↔공동(집단개원)으로 변경되면서 - 주 개설자가 변하는 경우(홍길동 ↔ 이몽룡, 홍길동) 주 개설자 명으로 신규 검진기관기호 부여 2. 법인으로서 설립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종전 법인기관 청산 후 신규 법인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 종전기관 ※ 종전 법인기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 번호가 동일하고 채권, 채무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진기관기호는 변동이 없고 설립 형태만 변경함(지정취소 사유 아님)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절차 : 보건소, 공단지사)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직장가입자 포함)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여야 함(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지역주민에 대한 출장검진,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건강검진 등 신고서’로 신고
 - 보건소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 출장검진기관의 요건충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함
 -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안내)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진 지정취소와 검진기관이 자격을 상실(검진기관이 지정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미 검진기관 자격이 상실된 경우)하여 직권 지정취소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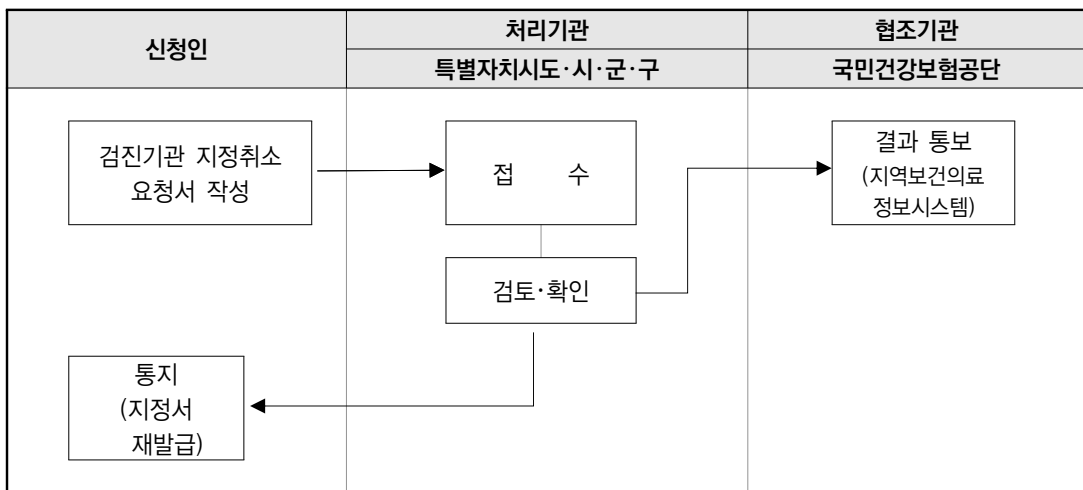
- (지정취소 접수 : 시·군·구 보건소) 자진 지정취소의 경우 검진기관은 지정취소요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함
- (지정취소 처리 : 시·군·구 보건소, 공단지사) 시·군·구 보건소는 검진기관이 신청한 지정취소를 처리한 후, 검진기관에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처리 당일에 관할 공단지사에 통보함
 - 검진기관이 지정된 검진 분야 중 일부 분야만 지정취소 하는 경우 해당 분야는 지정취소하고, 지정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지정서를 재발급함

예

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지정 검진기관이 대장암 검진만 지정취소 요청 시, 대장암 검진 분야는 지정취소하고, 지정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일반, 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일반검진기관 지정취소 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가능)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기관도 자동적으로 지정취소됨

- 관할 공단지사는 지정취소된 검진기관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검진 업무에 반영

검진기관 자진 지정취소 업무처리 흐름도



- (자진 지정취소가 불가한 경우) 검진기관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진 지정취소할 수 없음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1 현지확인 업무 개요

가. 정의

- “현지확인”이라 함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건강검진기본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사항 등을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함.
- “현지확인 조사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나. 목적

-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부실검진 사전예방관리를 통해 수검자에게 질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

다.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절차)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11조(검진기관의 현지확인) 및 제12조(시정 및 개선 요구)

2 현지확인 내용 및 조사대상 기간

가. 현지확인 내용

- 검진기관의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법 시행령 [별표] 위반사항 및 부당 청구 여부 등

* 위반행위 기준 적용례 : 시행령 개정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20.9.8)

나. 현지확인 종류별 조사대상기간

종류	주요내용	조사대상기간
정기 확인	정기점검	지정기준과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확인
	집중점검	지역본부 자체계획에 따라 검진기관을 선정·방문하여 부실검진내용을 집중확인
	합동점검	본부에서 현안 및 중점사항 관련하여 검진기관을 선정, 지역본부 및 지사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현지확인
출장검진확인	출장검진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기준과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당일
수시확인	민원발생, 제보 등으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내용 확인	해당기간*
부당검진조사	부당검진 개연성이 높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내역이 지정기준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부당검진 등 확인	3년

* 민원발생 및 조사의뢰 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민원접수 또는 조사의뢰 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시
 주1) 해당기간내 조사시 추가로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 5년의 범위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음.
 주2) 현지확인시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이외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현지확인 조사자의 임무

- 현지확인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지확인 사전 통지 등 정해진 절차 준수
- 조사자는 현지확인 대상기관의 관련규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자료 위주로 구체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지확인 최종 확인서 작성시 적발된 사항 등을 검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 받아 확인서 징구

- 현지확인 시 확인된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위반사항을 통보
- 현지확인 조사자는 현지확인 내용, 방법 및 유형, 기관 선정기준 등이 명시된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현지확인 계획”에는 전년도 현지확인 실시현황과 실적, 현지확인 시 확인된 제도 개선 및 검진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전년도 현지확인 추진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정취소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 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주 1) 위반행위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2항)
- 주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 주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4)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함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별기준 '나'

-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연평균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시의 기준: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 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2개년 이상에 걸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당비율은 각 연도의 부당청구액 및 검진기관에 지급된 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산정

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도

*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



※ 공단으로부터 위반사항 통보를 받은 후 10개월 이내 행정처분 완료 권고

행정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 통보

3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행정절차)

- 행정처분 대상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보건소, 공단지사)
 - 보건소
 - 민원 발생 사유 확인,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실사 등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공단지사에 행정처분 사유 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음
 - ※ 보건소는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 업무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2항)
 - ※ 공단에 확인업무 의뢰 시 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의뢰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
 - 공단지사
 - 검진기관 규정 준수 확인(출장검진기관 포함), 민원 사유 발생 확인, 검진기관 평가 업무, 보건소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검진기관 실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하여 확인 후 회신함
- 검진기관 위반행위 확인서 통보(공단지사)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사항 통보서 및 확인의견서(붙임 5)와 증빙자료(개인정보자료는 보호)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통보함
 - ※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접속경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 「개인정보 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에 필요한 추가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공단에 공문으로 요청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처분 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3. 검진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4.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 채취, 임상검사 실시 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고의로 거짓 판정한 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거나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출장검진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출장검진을 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9.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0.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 검진기관 행정처분(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는 공단지사의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를 참고하여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행정처분 여부·수준을 결정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름. 다만, 둘 이상의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진기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기준 감경이 가능함(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

검진기관 행정처분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마.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검진기관이「건강검진기본법」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 10만원 미만 부당비율 2% 미만 또는 연평균 부당청구액 50만원 미만 부당비율 1% 미만으로 업무정지기간이 0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위반 검진기관에 대하여 공문으로 행정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이후 위반 건수에 대하여 누적 합산함.

행정처분 내용 예시

「건강검진기본법」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1차 위반시의 기준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0일을 통보함. 또한, 1차 행정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를 합산하여 업무정지 일이 산정될 수 있음.

*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1%미만인 경우와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도 업무정지 1회 처분

- 행정처분 시, 공단에 처분사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며, 처분 전 반드시 검진기관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을 전산에 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보건소는 업무정지 기간 경과 후, 동 사실을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검진기관 사후관리(공단지사)

- 공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을 전산에 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검진기관 행정처분 관련 참고사항

- 검진기관 행정처분 발생 시, 검진행위에 대한 검진비용 환수 가능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검진기관 행정처분 결과 전산관리(등록)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처분 결과는 공단으로 전산 자동 연계되어 공단에서 사후관리 추진
 - ※ 접속경로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붙임 12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안내

1. 출장검진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검진기관과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출장검진 관련법 현황 : 참고자료 참조

-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항목)외 다른 검진항목에 대해 출장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개설)에 위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2. 출장검진기관

- 2010. 3. 22. 이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검진기관

3. 출장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반검진으로 출장검진기관이 직장(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구강 포함) 및 암검진(출장검진이 가능한 암검진에 한함)
 - 출장검진기관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함

4. 출장검진 신고 및 관리 체계

-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10일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첨부 제외)
 - 의사·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사업장 또는 기관 출장검진의 경우에도 신고요건 같음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19.〉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	소속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총 () 명							
	의사	명	치과의사	명	한 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치과위생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원무행정요원	명	기타	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신고 제 호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 본 신고확인서는 출장검진, 순회진료 등의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 총 () 명							
	의사	명	치과의사	명	한 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치과위생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원무행정요원	명	기타	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보건소장 (직인)

유의사항

「지역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면서 위 신고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출장검진 관련법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 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8. 19.>

붙임 13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 검토의견서(별지1)

결	담당	팀장	부장	지사장
재			전결	

■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 검토의견서 ■

연번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지정 신청일자	검토·확인			비고
				현지확인일	교육이수	결과	
(예시)							
1	건이병원	31000001	'12.3.23	'12.3.24	'영유아' 또는 '일반' 또는 '구강'	적합	
			"별첨"				

■ 작성요령 ■

1. '검토·확인 결과' 란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
2. '교육이수'란 공단에서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교육항목 기재
3. '비고'란에는 송부일이 접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 '초과일수 및 지연사유' 기재
4.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표시를 하고, 별도 서식을 사용할 것
※ 공단에서는 결재 후 '결재란'은 삭제하고 직인을 찍어서 송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 현황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붙임 검진기관지정신청서 00부.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직인)

참고자료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검진기관별 구분)

구비 서류	검진기관 구분	일반 검진	암검진						영 유 아	구강 검진
			위장	대장	간	유방	자궁 경부	폐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검진인력 자격·채용 증명서류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신고증명서 1부 - 검사성적서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조영촬영기)			○		○		
특수의료장비 (유방촬영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특수의료장비 (정량적전산화단층검사 QCT)		○								
[출장 검진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	○	○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 (통보일 : '00. . .)	
통보기관	
처리기관	
검진기관	
확인내용	
관련근거	
첨부서류	

■ 확인의견서 ■

검진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20

국민건강보험공단 00 지사장

붙임 18

보건소 - 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1. 목적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송수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 국가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2.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에 따른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제출자

4. 연계 대상 업무 내용

- 건강검진 정보
 - 검진기관 신청 및 취소, 행정처분
 - 제공자료 : 검진기관 지정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행정처분,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공주기 : 수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제출자
 - 제공자료 : 대상자 대장 및 현황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사후 정보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자 중 정상소견 이외의 자
 -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제출자
 - 제공자료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제공주기 : 월 1회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철회
 - 대상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를 철회한 자
 - 제공자료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비용 정보

- 위탁검진비용 지급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자료 : 국가건강검진비용 청구·지급 내역
 - 제공주기 : 월 1회
-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검진 대상자
 - 제공자료 : 위탁검진비용 환불현황 및 휴·폐업 검진기관 및 6개월간 검진비 청구 내역이 없어 공단에서 검진비 상계 처리가 불가하여 현금고지해야 하는 대상 건
 - 제공주기 : 월 1회 또는 사유 발생시
 - 제공방법 : 문서 통보 및 전산자료 연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나의 업무 →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위탁검진비 환수·환불현황)

5. 자료제공 방법

연계 업무		제공방법
건강검진 정보	검진기관 신청,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 등 신고	공단 ↔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공단 → 보건소
검진사후 관리정보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공단 → 보건소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중 철회자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정보	위탁검진비용 지급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연계 대상업무 상세 ■

시스템	업무	단위업무기능명	기능설명
보건소 연계	건강 진단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정신청 기본정보
			지정신청 인력정보
			지정신청 장비정보
			지정신청 검토 결과
			지정취소 신청정보
			건강진단 등 신고
			검진기관 변경신고
			행정처분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영유아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건강 및 구강)결과 통보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대상자(미수검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건강 및 구강)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및 관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현황 보건소 통보
	검진 사후	보건소 사후관리 사업결과 전송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관리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보건소 추진
		결과활용 동의자 및 결과	결과활용 동의 대상자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검진결과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문진표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철회(쌍방향)	결과활용 철회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철회 수신
	지급/ 청구	위탁검진비 지급	예약금 입금 내역
			예약금 지출 내역
			예약금 수입/지출 현황
		환수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환불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2023 건강검진사업안내

CHAPTER 06

부 록

-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6-2.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 6-3.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례
- 6-4. 행정처분 관련 법령 자문 사례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이하 ‘건강검진비용’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비용”이라 함은 건강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비용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비용 및 영유아건강검진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후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탁금”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분기별 예탁금액”이라 함은 분기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단으로 통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결정액을 말한다.
4.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2. 건강검진비용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 등) 공단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협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 위탁협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개설)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검진종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를 개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 입금 반송 관리계좌를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개설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내지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지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가상계좌 등을 개설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 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을 시·도(시·군·구)별로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용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교부내역 통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 또는 반기 각 사·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내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한다.

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초월 20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내역을 매 분기 초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 공단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예탁금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군·구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각 시·군·구별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군·구별 일일 예탁금 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 결산 시점에 정산하고, 시·군·구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군·구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원칙) ① 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비용 청구건 중 오류로 인하여 지급불능인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정 전에 건강검진기관에 반송하여 새로이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강검진실시 기준에서 정한 검진비용 정산기준(별표6)에 의거 처리한 후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정산결과 정상 지급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비용 총괄표, 은행별지급의뢰서총괄표 및 계좌송금의뢰총괄표를 통하여 지급 건수 및 금액, 원천징수세액, 채권압류금액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2. 제1호의 지급 결정액 중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
3.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건강검진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지급 대상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내역을 건강검진기관별로 관리하되, 즉시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건강검진비용이 추가로 예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 순위) 공단은 시·군·구별로 건강검진비용 심사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되, 예약금 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건강검진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착오지급 시 정산)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기관에 즉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할 건강검진비용과 상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예약금의 정산) ① 공단은 매 분기 예약된 시·군·구별 예약금을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정산한 후 예약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약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사업 정산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약금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될 검진비용에서 환수결정액을 상계처리 한다. 다만, 해당검진기관의 휴·폐업 또는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경비사용)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수수료·행정경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약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관리 등) 예약금의 예약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2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Q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A**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검진 일일 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약속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 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영검사 및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방사선사가 반드시 필요함

Q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 A**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Q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 A**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임상병리사·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름

Q 4. 검진기관 인력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이 되는지?

- A**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Q 5. 검체검사 위탁은?

- A**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 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교 제2호)
 -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0-313호, 2020.12.24) 별표 9 참조

Q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 A**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교 제3호)
- ※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특정서식 없음) 사본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Q 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 A**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 폐암검진교육은 의사2인(영상의학과 전문의1명을 포함)이 영상판독, 결과상담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으로도 인력기준은 충족함.

Q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 A**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공단)
-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실시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폐암검진 영상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국립암센터)

Q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 A**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Q 10. 「건강검진 등 신고서(종전 '출장검진계획서')」 접수 처리는?

- A**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안내)

Q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A**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2-69호, '12.6.22)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Q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A**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Q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A**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되어 기존 관할 시·군·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취소 후 '검진기관 지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Q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A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함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is.nhis.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6-3 행정처분 관련 참고자료(질의 사례)

1 출장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 기준

질문요지

1. 병원급 출장검진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공단으로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 조치 당함. 출장검진기관은 외부위탁이 안되는걸 알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외부업체로 위탁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늘어날 경우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청구 코드가 따로 있는지 문의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다만,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 검진기관이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위탁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2. 병원급 이상이나 출장검진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체검사의 위탁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상할 수 없는 검사장비의 고장이나 검사량의 급작스런 증가 등 일시적인 부하로 인한 수검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체 검사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3. 또한 검진기관의 지정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하며, 별도 청구코드는 없음

② 일반검진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암검진 실시 가능 여부

질문요지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일부 암검진기관(위·대장·간암)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반검진기관 지정이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그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지정이 취소되면 위·대장·간암검진기관도 지정취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조건 위반으로 일반검진기관이 수일에서 수개월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아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암검진(위암·대장암·간암)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지자체(보건소)에서 검진기관 특정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2.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3. 질문 내용과 같이 업무정지는 일반검진 분야에 한해 적용되므로 암검진 실시는 가능함

③ 출장검진기관의 원내기준 미달 시 불법행위일자 기준

질문요지

A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지정받은 후 곧바로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함. 원내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고, 각종 의료장비의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장검진을 진행하고, 공단에 검진비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으로 A검진기관이 불법 출장검진을 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공단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

위 사례와 같은 사항에서 불법행위 시작 적발일은 언제로 판단하는지?

- ①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일자
- ② 최초 불법 출장검진일자 (2019.12.15.)
- ③ 공단에 출장검진비 청구일자 (2020.1.10.)
- ④ 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일자(2020.03.17.)
- ⑤ 공단이 해당 보건소에 불법행위 사실 통보일자(2020.4.20.)

답 변

1. 출장검진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만이 추가 지정기준을 충족한 후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5 관련
2. 따라서 내원검진의 지정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출장검진 지정기준도 미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원검진 지정기준의 미달 시점(①)을 출장검진 지정기준 미달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 다중수검 시 환수 기준

질문요지

- ① A기관 검진일자 : 9월 (수검정보 미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 ② B기관 검진일자 : 10월 (수검정보 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 당시 B기관에서 검진자 자격조회시, 기등록건 없었고, 1차 대상자 였음
- Q. A기관과 B기관에서 동시 검진청구가 진행되어 양쪽으로 비용지급이 된 경우 이중수검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 Q. B검진기관은 기업종합검진으로 공단검진 비용 포함 할인율이 적용된 비용이다 안내 받은 경우 구상권을 받은 수검자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 Q. B기관은 환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경우 부당청구기관에 해당하는 건지?(B기관 청구 시 선청구 기관은 없었음)

답 변

1. 건강검진 대상자가 하나의 검진연도에 법으로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2회 이상 동일한 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로 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실시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이중으로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대상자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종합건강검진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검사 내용과 비용 여부를 안내하여야 함
3. 위 사례의 경우 A기관에서 수검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수검자가 A기관에서 이미 받은 바 있는 동일한 국가건강검진을 B기관에서 중복하여 받은 것이므로 공단은 수검자에게 검진비용을 환수함
4. 다만, B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국가 건강검진임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조사로 확인된 경우 B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음

⑤ 국가건강검진 청구프로그램 입력 가능한 인력의 기준

질문요지

1. 국가건강검진시 유방촬영이나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 후 PACS에 결과를 입력하고, 검진결과처리를 위해 의사가 공단프로그램에 판독결과를 다시 입력을 하고 판정을 하고 있음
2. 판정은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되는 부분이나, 결과입력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그대로 공단 양식에 따라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되는지 궁금함

답 변

1. 암검진의 판독 및 판정은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및 작성(서명포함)한 판독소견서 및 검진 의사가 판정 및 작성(서명 포함)한 암검진 기록지를 간호사(행정요원 포함)등이 청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에 대신 입력하는 작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 등이 없이 간호사(행정요원포함)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⑥ 검진 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장애) 시 대필 가능 여부

질문요지

1. 출장검진 담당 검진 의사가 수검자를 문진(상담)을 하고 자필사인을 한 뒤 귀원을 하고, 모든 결과가 나온 뒤 검진 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2급장애)으로 상기 모든 사항 중 일부 소견 및 조치사항을 간호사에게 대필을 지시하여 간호사가 작성한 경우 환수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되는지?
2. 검진 의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의사가 문진표의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한 상태에서 의사 지시에 이루어진 소견 및 조치사항에 간호사의 대필 행위가 위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함 (즉, 의사지도하의 범위도 해석 요망)

답 변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서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의 판정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등의 소견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검진 의사가 직접 판정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정결과 및 소견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호사 등을 통하여 대신 기재(대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의견 등이 없이 간호사 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3. 또한 검진 의사 서명은 검진기록지 작성 내용을 검진 의사가 최종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검진 의사가 먼저 서명을 하고 간호사 등이 검진결과를 토대로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하였다면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음

7 출장검진 의사 1인당 100인 초과 검진 시 처분 기준

질문요지

출장검진 시 일반검진, 구강검진이 의사1명당 1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10명을 의사 1명이 검진을 하고 110명에 대해 청구를 하였다면, 건강검진기본법상의 조치내역
2. 10명분만 환수를 당하는건지, 110명 전체 환수인건지 궁금함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5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 가. 의사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구강검진도 동일). 본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서 정한 '개별기준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 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 출장검진기관에 업무 정지 3개월(1차위반 기준) 처분을 명할 수 있음.
2. 부당검진비용 환수 사항은 지정기준을 위반한 범위에서 실시된 검진내역이 대상이며, 질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10명의 해당하는 검진비용에서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⑧ 부적합 소독제 사용 위반 건의 행정처분 기준

질문요지

내시경 기구 소독 및 멸균 방법 부적정(부적합 소독제) 사항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동법 시행령」 10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1. 내시경기구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2. 해당 건으로 동 고시를 위반하여 행한 사항만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및 「동법시행령」 별표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반)에서 규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9 방사선 촬영방식 변경 청구 건의 위반사항 통보 기준

질문요지

1. 방사선 촬영방식을 필름방식에서 CR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지정받은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건강검진 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검진비용 및 방법 등)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진장비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상태로 검진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항 위반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개설자가 검진비용 청구시 금전적 이득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청구 한 것인지, 방사선기기 교체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 위반사례 행정처분 시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검진 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복지부 건강증진과-3557호(2019.9.20.) "건강검진 실시기준(검사방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안내"

6-4 행정처분 관련 참고 자료(법령 자문 사례)

주 의

- 본 자문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사례)으로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자문사례 재가공 및 외부 제공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인력 방사선사를 두지 않은 검진기관의 인력기준 위반 및 검진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다음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2. A 의원이 건강검진기본법상의 암검진 기관 인력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위반이라면 기 지급 검진비용의 환수 가능 여부 및 범위 (위장조영검사 비용에 대하여만 환수 vs 인력기준 미달상태에서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① 질의 배경

- A의원은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인데, 2017.2.1.부터 같은 해 5.10.까지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여 검진비용을 지급받았음
- 이에 대해 A 의원의 개설자(甲)는 본인이 진단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위장조영검사를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의사가 방사선사 없이 직접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행위 자체에 '의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질의1).
 - 가. 대법원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 의료인의 지도 없이 수행된 물리치료사(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특정 부문 의료기사의 존재가 의사의 해당 의료행위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상병리사 없이 진행된 심전도 검사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가 의사 및 의사의 지도를 받은 간호사에 의해 시행되었다면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나.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에 한정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이 적은 부문의 의료행위는 의료기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한 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인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등 참조]
- 방사선사를 배제하고 의사가 직접 위장조영검사를 수행한 행위 자체에 의료법을 위반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러나 의료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은 전혀 별개의 법률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검진기관도 건강검진기본법은 충분히 위반할 수 있습니다(질의2).
- 가. 암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 나. 그런데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검진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방사선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방사선사가 없는 암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검진기관에 해당합니다.
- [甲의 위장조영검사는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에는 해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건강검진기본법상의 적법한 검진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자는 요건과 효과가 구분되는 별개의 법률로, 국가건강검진으로서의 암검진은 두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검진행위가 됩니다]
- 다. 더욱이 건강검진기본법이 암검진 기관의 인력기준에 의료인인 의사 외에도 방사선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방사선 기기의 운용과 점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방사선사로 하여금 방사선 기기를 사용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건강검진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A의원의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사안의 특이성 및 재량권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장조영검사 비용에 대하여만 환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가. 건강보험급여에 속하는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모두 환수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누69528 판결 등 참조]

- 나.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급된 검진비용의 환수가 가능한데 통상 법령을 위반 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된 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지만,
- 본 사안의 경우 조영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사 없이도 유효한 검진 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 의료행위 자체의 위법성 없이 건강검진기본법상의 행정규정 위반만이 인정되어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다수의 판례가 비용 일부만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59463판결 등 참조),
 - 암검진실시기준은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검진의 경우, 해당 항목의 비용만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안의 경우 일부항목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실시한 검진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 위장조영검사에 대한 비용만을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검진인력 일반검진교육 미이수 의사가 검진을 실시한 경우 환수 가능 범위

1.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항목 검진비용”의 범위
2.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3. [별표6]의 “해당항목 검진비용”도 [별표기]의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① 질의 배경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 검진을 실시한 경우 공단은 검진기관으로부터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교육 미이수 의사가 검진을 실시한 경우, 환수되는 “해당항목 검진비용”의 범위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한 경우 공단은 검진기관으로부터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검진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해당항목 검진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거나 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환수범위를 “해당항목 검진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환수범위를 “해당항목 검진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 교육 미이수 의사가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부당하게 검진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검진비용 환수기준 중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을 환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환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수검자가 검진한 모든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교육 미이수 의사가 검진을 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환수하고자 한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을 환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진찰, 상담, 판정 및 교육을 의사가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에 해당하는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이와 달리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그 외의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 [별표1]은 검사방법에서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일반건강검진 중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항목

- 이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을 살펴보면(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별표1])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①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② 인지기능장애, ③ 생활습관평가, ④ 정신건강검사입니다. 그 밖에 흉부방사선 촬영의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해당항목 검진비용의 1/2),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 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별도로 환수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구강검진에 대한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기타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은 의사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바, 의사가 아닌 자 또는 교육 미이수 의사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환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소결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①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② 인지기능장애 ③ 생활습관평가 ④ 정신건강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교육 미이수 의사가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검진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해당항목 검진비용”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검사항목의 하위항목으로 규정된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측정 등 단순한 측정 및 결과통보는 실제적으로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검사방법에는 측정이나 결과통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측정 및 결과통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의 진찰 및 상담과 완전히 분리되는 항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으로서, 교육 미이수 의사가 실시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별표6] 검진비용 정산기준의 “해당항목 검진비용”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 공단은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별표 6] 검진비용 정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사유가 있다면, 이를 정산한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 13 조 제 4 항). [별표 6]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 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한 경우 귀 공단은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정산한 후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즉, 귀 공단이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정산하는 것이고, 귀 공단이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한 후에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였음이 밝혀진 시기에 따라 정산 및 환수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되므로, [별표6]의 “해당항목 검진비용”도 [별표7]의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진인력

검진 의사가 2명인 출장검진기관이 내원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2명 모두 출장검진 시 검진비용 환수 여부

- 검진 의사가 2명인 출장검진기관에서 내원검진기관을 비운 상태로 2명 모두 출장검진이 가능한지 여부
- 원내를 비운 채 2명이 출장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비용 환수 범위
- ※ '18.10. O산업 등 3개 사업장 출장검진을 하면서 검진 의사 A는 07:00~16:00까지 수검자 93명, 검진 의사 B가 12:00~15:30까지 수검자 44명 검진을 실시함.

1] 질의 배경

- 검진기관(일반암·구강)이 출장검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원검진 지정기준 외에 추가로 출장검진 지정기준(별표5)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정기준에 따라 수검자 100명 당 검진 의사 1명을 두되,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A기관에서 2018.10.2 출장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 의사 1명(A)가 수검자 137명을 검진하였음을 확인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나, A기관은 원내에 있던 검진 의사(B)가 출장검진에 참여하여 초과 인원에 대한 검진을 하였음을 주장

2] 질의에 대한 답변

1. 검진 의사가 2명인 출장검진기관에서 내원검진기관을 비운 상태로 2명 모두 출장검진이 가능한지 여부(1번 질의)

가. 출장검진 관련 법령 및 기준

-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검진기관의 종류는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되며,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1 별표2 또는 별표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것이고 ('별지1' 참조), 별표2는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것이며, 별표4는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5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별지2'와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일반검진기관으로서 출장검진기관으로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1의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추가로 별표5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인력기준 중 '의사'의 경우 일반검진기관 기준인 '연 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의 요건 및 추가로 "일일 (출장)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는 출장검진기관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므로 일반검진기관으로서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게 됩니다.

나. 검진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

1)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국가검진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2) 환수

-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실시기준 제14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쟁점

- 문제는 출장검진 의사가 출장검진을 함에 있어 당일 출장검진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내원하는 환자를 보는 일반검진 의사(이하 '내원검진 의사')가 출장검진에 합류하여 진료를 하였을 경우 출장검진 기관 지정 기준 위반인지, 이를 이유로 원내에서 검진 의사가 진료한 부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입니다.

2) 출장검진 기관 지정 기준 위반인지 여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상 일반검진 기관이 출장검진 기관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기준 중 의사의 경우 일반검진 환자 25명 당 1명, 출장검진 환자 100명 당 1명을 두면 족하고 위 두 의사가 반드시 각각 일반검진 또는 출장검진만을 하여야 한다거나 출장검진 당일 내원 의사는 반드시 기관 내 상주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부존재 합니다. 공단 내부 규정인 운영세칙에 위와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단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검진에 내원 의사가 같이 출장을 가서 진료행위를 한 것을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환수가부

- 설령, 출장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기준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부당이득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은「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92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출장검진 지정기준에 의사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출장검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② 내원검진 의사도 면허를 가진 의사인 이상 그가 출장검진을 하였다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형식적으로 내원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출장검진만 실시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은 추상적인 반면 면허를 가진 의사가 출장검진을 통해 진료한 부분을 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 및 고시 해석상으로는 내원검진의사가 출장 검진의사와 함께 출장을 나가 진료를 하였다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강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 출장검진기관의 주장처럼 출장검진에 2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는지, 아니면 공단의 주장처럼 출장검진의사 1명이 하루에 100명을 초과하는 환자를 진료하였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출장검진의사 1명만 출장검진으로 하루에 100을 초과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가 입증되는 경우(보건소에 1명으로 신고, 혼자 출장검진 하였다는 자필 확인서, 수진자들에게 진료받을 당시 의사가 1인이었는지 여부를 확인, 출장 시간에 내원환자에 대한 검진비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된 경우 등) 이는 출장검진 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00명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검진비용은 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내를 비운 채 2명이 출장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비용 환수 범위(2번 질의)

- 위에서 살펴보았듯, 출장검진비용의 환수는 어렵고, 내원검진비용은 해당 시간동안 청구될 수 없으므로 환수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만약 내원검진의사가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 내원검진비용이 발생하여 청구되었다면 출장검진비용 또는 내원검진비용의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4 검진인력

출장검진기관이 타의료기관의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장검진기관이 의료법 제39조에 의거 다른 의료기관의 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① 질의 배경

- 출장검진기관이 A사업장 소속 검진대상자에게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A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인 B의원에 설치된 흉부방사선 촬영실 및 x-ray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건강검진기관 지정 요건

가.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제1항), 그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에서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검진기관의 유형을 구분(제1항)하여 그 중 일반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별표1로 규정(제2항) 하면서, 일반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일정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1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 1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제2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2. 출장검진기관의 장비공동이용가능성

가. 검진기관의 의료법 제39조 따른 장비공동이용

-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1]에서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신청자격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치과병원’으로 정하면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별표1] 비고란을 보면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사, 탈의실 및 방사선촬영실, 방사선 촬영장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자격에 규정된 모든 검진기관이 아니라 의원급으로서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곳에 한정하여 의료법 제39조에 따른 장비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출장검진기관의 경우

- 출장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이 [별표1]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5]의 기준을 갖추어야만 지정될 수 있는 바,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 문언, [별표1]에서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에게 제한하여 장비공동이용을 허용한 규정의 반대 해석 및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 ①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하려면 일반검진기관의 요건뿐만 아니라 [별표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 ② 일반검진기관으로서 의원급이 출장검진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경우와 달리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 ③ 예외적으로 장비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별표1]의 비고3 규정의 반대 해석상, 출장검진도 실시하는 의원은 의료법 제39조에 따른 장비 공동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요구한 인력·장비·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 ④ 만약 출장검진기관이 위와 같은 장비 등을 구비 하지 않았다면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며,
 - ⑤ 설령 출장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했다라도 관련 규정상 검진기관 지정은 그 지정받은 시설·장비·인력으로 출장검진을 실시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수행에 적절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 8호) 등에 대하여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정받은 사항과 달리 관련 규정상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타 의료기관의 장비공동이용은 지정기준으로 신청자격·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한적·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 결국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아닌 나머지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합니다)은 타 의료기관의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법 제3조 제3호의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5 검진인력 일부 장비의 미사용 상태가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기관의 경우,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위반 사항 통보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① 질의 배경

-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그런데 A기관의 경우 지정받을 당시에는 2대의 원심분리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2015.9.25.부터 같은 해 11.27.까지 1대는 고장인 상태로, 나머지 1대는 진단검사실이 아닌 기관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A기관의 지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이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공단은 현지확인 결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 검진기관의 위반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통보 의무 수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관 내에 원심분리기가 '구비'는 되어 있으나 '사용'되지만 않았을 뿐이라면, 이를 두고 '지정기준의 위반'이라고 평가할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원심분리기를 갖추어야 하는 바, 검진기관이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인 지정기준 미달에 해당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이 났다거나, 혹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는 '구비는 하고 있으니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해석①)'고 보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구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해석②)'는 해석이 모두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석 ②를 따르더라도, '검진기관이 항상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규정취지이기 때문에 일시적 고장이나 수리와 같은 일시적 공백상태도 허용될 수 없다(해석 ②-1)'고 볼 수도 있고, '적어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준은 되어야 지정기준 미달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비사용 기간이 2달에 달한다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해석 ②-2)'라고 볼 수도 있으며, '통상적인 계도대상의 시정기간을 15일로 두는 점이나 기기의 즉시 도입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2달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해석 ②-3)'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그런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엄격하게 해석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나. 본 사안에서도 위반사항의 통보는 곧바로 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공단 역시 통보에 앞서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유권해석 등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기가 '구비'된 이상 '지정기준을 충족은 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해석 ①),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지정기준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해석②-1), 비사용 기간의 장단에 따라 지정기준 위반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해석 ②-2)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해석을 배제함이 바람직한 이상,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공단이 반드시 지자체에 지정기준 위반 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검진인력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의미

- 위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는 아래의 각 상황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가?
 - 검진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여 건강검진을 한 경우
 -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종별(일반,출장,암,영유아 등)을 뛰어넘어 검진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① 질의 배경

-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검진기관의 현지확인 결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및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등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의 사유들 중,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지가 문제됨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규정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함이 원칙이되, 형벌이나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더욱 엄격한 해석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 나.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상기의 해석방법을 따른다면, 이 사건 규정은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종별을 위반하여 검진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이 사건 규정은 ‘검진기관이(주체 요건), 지정받은 사항(객체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건강검진기본법의 문언상 ‘지정받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검진기관의 지정’이 유일하며(주체요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검진기관의 ‘지정’은 검진기관의 종별을 나누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객체 요건).

따라서 문언에 충실한 해석 방법을 취할 경우, 상기의 ‘지정받은 사항’은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종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반면 ‘검진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정한 것’이고 검진기관이 검진 항목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는 절차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언적 해석으로도 ‘검진항목의 누락’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규정은 통보로 인하여 즉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라는 침익적 처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할 의무가 있는데,

①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분은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위반 시 지정취소(별표 3호)로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검진기관에 대한 처분(별표 2호)과 그 정도가 동일한바, 단순한 과실로 검진항목을 누락한 검진기관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검진기관과 동일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점,

② 또한 ‘지정받지 못한 (종별의) 검진기관 검진업무 수행’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상태의 검진업무 수행’은 모두 검진기관에 요구되는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유사한데, 처분의 정도가 동일한 이상 ‘검진항목의 누락’ 보다는 ‘지정받지 못한 검진기관의 검진 업무수행’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검진기관이 고의로 특정 검진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일부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거부한 경우(별표 9호)와 그 행위태양이 동일한데, 이 경우의 처분 수준은 각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로서 별표 3호의 수준보다 낮은 바,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방법을 따르면 일부 검진항목의 고의적인 누락은 이 사건 규정보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별표 9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보다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 검진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7 환수기준 영상자료를 미보관한 검진기관에 대한 환수 및 통보의 가능 여부

- 공단은 A 에 대해 환수처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환수 범위는 어떠한가?
-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A 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질의 배경

- A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해당 검진기관이 흉부방사선촬영 검사 사진, 위장조영검사 사진, 유방촬영검사 사진 등(이하 사진자료)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함
- 해당기관은 위 사실관계에 대해, '모든 사진 자료들을 내부 직원인甲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사진 자료는 없지만 사진 촬영 및 판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탁의사의 판독 소견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고, 판독에 따른 판독료 송금 내역서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함 [소견서 및 내역서는 실제 존재하며, 수탁기관의 판독 의사도 유선으로 판독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환수처분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 급여비용은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급여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등 참조] 검진이 제대로 실시된 이상 '사후에 사진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진 비용을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따라서 환수처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검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 근거가 필요한데, 다만 '보관된 사진자료'는 사후적으로 해당 행위-방사선 촬영, 위장조영 검사, 유방암 검진 등-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는바, 사진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A의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 없이 검진이 실시되었다고 보고 환수처분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공단)에 있는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의 경우,

- 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진자료가 없을 뿐 해당 판독의사소견서는 존재하는 점,
- ② 판독 의사가 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판독료

지금 내역 역시 존재하는 점, ③ 그 외의 방법(ex 수진자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통해 실제 방사선 촬영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는 사실관계를 검진기관 측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주장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후에 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이 벌어졌을 때 검진기관 이 실제의 검사 행위(촬영 및 판독)가 있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반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공단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그러므로 환수처분을 결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만약 처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진자 조사 등을 통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환수처분을 하게 된다면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일부 검사항목 미실시'로서 해당 검사항목의 비용에 대하여만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또한 위와 같이 환수처분이 어렵다고 본다면, 통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 통보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 등을 발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도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 그런데 방사선 등 사진자료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해 검진기관이 이를 보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의 해태가 곧바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의 10가지 사유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검진이 일부 검사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상 통보 대상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검진이 일부 검사를 누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환수처분에 나아가는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때(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8 환수기준

사용용도가 식품(식품첨가물)인 소독제를 의료기관 내시경 기구 등에 사용한 경우 관련 소독지침 위반여부

- 2010년 시행 소독지침과 2017년 개정된 소독지침의 효력 발생 시기
- 인증(등록)사항이 '식품'인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구에 사용했을 경우 지침 위반여부
- 위 소독제에 대한 검진비용 환수 가능 여부

① 질의 배경

- 검진기관 현지확인 중 내시경 기구 등의 세척소독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식품첨가물)으로 인허가 받은 소독제와 인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소독제를 2017.5.1. ~ 2017.12.14. 까지 사용했음을 확인함
※ 식품(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칼, 도마 등) 및 설비의 소독에 사용
- 관련 소독지침 및 사용용도에 맞지 않아 내시경 세척소독비용 환수 진행 중 해당 검진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고시의 적용범위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3항 및 부칙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0.8.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 2010.8.13. 제정] (이하 '2010고시')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 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내시경기구: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 시에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10-61호, 2010.8.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17.6.22.] [보건복지부고 시 제2017-101호, 2017.6.22" 일부개정.] (이하 '2017 고시') 제4조(멸균 및 소독 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내시경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01호, 2017.6.2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는 고시

2010고시는 2010.8.13. 제정 및 시행되었고, 2017고시는 2017.6.22.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각 고시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므로, 2010.8.13. 부터 2017.6.21. 까지 2010고시가 적용되고, 2017.6.22. 부터 2017고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7고시 제4조 제3항은 2017고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시행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제4조 제3항에 한하여 2010.8.13.부터 2017.12.21.까지는 2010고시가 적용되고, 2017.12.22. 부터는 2017고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료기관이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을 내시경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기간은 2017.5.1. 부터 2017.11.까지입니다.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내시경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한 것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3항 위반이라면, 2017 고시 부칙에 따라 동 고시 제4조 제3항의 경우 2017. 12. 21.까지는 2010 고시 규정이 적용되고 2017.12.22. 부터는 2017 고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료기관의 소독제 사용행위는 2017.5.1. 부터 2017.11. 까지 이므로 2010 고시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그 고시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 소독제 사용이 고시 위반인지 여부(2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가. 2010 고시 제4조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위한 요건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0 고시 제4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멸균 및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 시에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시경 등 의료기구를 멸균 및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① 인정기관의 인증을 득한 것일 것 ②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사용가능한 것이고, 2010고시의 목적은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2010 고시 제1조 참조)이므로 그 사용방법은 의료기구 등의 소독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기관은 페라산, 박트제로큐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내시경 등 의료기구를 소독하였는데 위 두 제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모두 '식품에 쓰이는 것으로 분류되어있고, 그 사용방법이 의료기구의 소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페라산의 제조회사인 ㈜로타는 자사 홈페이지에 페라산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식품가공 설비, 기구 등의 살균소독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처(가공, 축산, 임업, 농업)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트제로큐 제조회사인 오메가팜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등록된 곳이고 자사 홈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다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내시경 소독제로 쓰이는 다른 제품인 '바이텍스액'의 경우 식약처에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있고 '의료기구의 살균용'으로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참조). 따라서 페라산과 같이 사용방법이 의료기구의 소독에 관한 것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여 의료기구를 소독한 것은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사용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2010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환수가부(3번 질의에 대한 답변)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1)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두3975]」라고 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제6항은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 사건 의료기관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으로 인증받아 식품가공설비, 기구 등의 살균소독 등에 쓰이는 제품을 사용하여 의료기구를 소독하였으므로 당시 유효한 고시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시행 2010.8.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1호, 2010.8.13" 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가 가능합니다.

4. 결 론

식약처로부터 식품으로 인증받고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사용방법을 보더라도 의료기구 소독용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제품을 의료기구의 소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 행위는 2017. 5.1. 부터 2017.11. 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2010고시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고, 위 제품은 식품으로 인증받고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사용방법을 보더라도 의료기구 소독용이 아니므로 2010고시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 보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환수기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중복조사금지에 관하여 질의

- 공단은 검진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하던 중,
- 기존 조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위반 내용이 발견하여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① 질의 배경

- 공단은 A검진기관으로부터 부당검진비용을 환수하였고, 이로 인해 시·군·구(보건소)로부터 1.5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음
- 이후 재확인 과정에서 기존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검진비용을 환수하고자 함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정조사기본법 적용가부

가. 행정조사의 의의 및 중복조사 금지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

중복조사금지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상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가부

공단은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건강검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검진기관에 행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행위는 행정조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질의 주신「건강관리 업무처리지침」상 “검진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점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후관리

가) 위반사항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결과 미회신 시 보건소에 진행 사항 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 협조 독려(결과는 문서로 수신)

나) 업무정지 처분 검진기관

- 업무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반행위의 조치여부 확인

※ “건강검진 현지확인 내역” 화면에서 '수시확인'으로 확인내역 등록

나) 지자체-검진기관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진행

- 지자체-검진기관 간 행정소송 시 진행사항 수시확인하여 변동내 역 보고

※ 월 보고 시 '비고란에 보고

이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정지 받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반행위의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기 처분된 위반행위의 조치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조사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시행한 2019.7.30.자 현지확인 당시 점검했던 기간(2014.1.1.-2019.6.30.) 중 조사가 미진했던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은 동일한 기간, 이미 통보한 조사항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공단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시행한 2019.7.30.자 현지확인 당시 점검했던 기간(2014.1.1.~2019.6.30.) 중 조사가 미진했던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환수기준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가능 여부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출장검진 장소 까지 이동편의를 제공한 경우(이하 “본건 차량 제공행위”) 건보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수검자의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질의 사항 1”).
- 검진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을 실시할 때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 대상 부분 제외)을 면제·할인한 경우(이하 “본건 면제·할인행위”)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질의사항 2”).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종료 후 수검자에게 빵·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질의사항 3”).

① 질의 배경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이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의료법 제27조 제3항).
-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건보법 제57조 제1항).
-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유죄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공단이 한 환수 결정은, 위와 같은 환자 유인행위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환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위 판결 그대로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19.2.21. 선고2018나2036388 판결)

② 질의에 대한 답변

1. 질의사항 1 및 2 에 대한 답변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되는 행위의 개별적 유형으로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3항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본건 차량 제공행위 및 본건 면제·할인행위와 관련하여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본건 차량 제공행위 및 본건 면제·할인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ii)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검진비용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본건 차량 제공행위 및 본건 면제·할인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본건 차량 제공행위 관련

본건 차량 제공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본건 차량 제공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검진기관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승인 받은 환자들에 한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는바(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 청주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2노 364 판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본건 차량 제공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건 면제·할인행위 관련

한편, 본건 면제·할인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면제·할인행위의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서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이 있으며, 이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입니다. 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암관리법, 동법 시행령, 암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이와 관련하여 암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아닌 암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단컨대, (i)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에서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정하면서 암검진을 정하고 있는바, 암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ii)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건강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iii)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 외에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료법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암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서 암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은 제57조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규정에 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7.10.선고2008두 3975판결).

즉,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 받을 수 없는 보험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차량 제공행위 및 본건 면제·할인행위는 관련 법령인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검진비용이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징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검진비용 역시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보험급여”는 동법 제1조를 기초로하여 ①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②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급여, ③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급여, ④동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윤기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184 면·185 면).

따라서, 건강검진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대상인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출장건강검진기관이 ①건강검진 실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한 경우, ②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1.30. 법률제9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해당)에 따라 그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법2013.4.25선고 2012구합3279판결, 광주지법2013.6.20선고 2012구합 5466판결).

라. 결론

(1) 1 에 대한 답변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 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위반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자 유인행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의 일부인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으로 부터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질의사항 2 에 대한 답변

검진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 대상 부분 제외)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위반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귀 공단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사항 3 에 대한 답변

가.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의료법 제 27 조 제 3 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의료법(2002.3.30. 법률 제 66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3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 도 5724 판결).

즉, 대법원은 금품 제공 등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유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판례의 태도에 따른 판단기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며,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 5724판결).

따라서 환자 유인행위의 해석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대법원 역시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 유인행위에 관련된 경우 그것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료시장 질서의 근본적 침해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장연화, 「의료법상 환자유인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79 면·181 면).

이와 같은 의료시장 질서는 의료법의 목적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장경쟁질서로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보호·증진과 연관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 본건의 경우

본건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이 종료된 수검자에게 빵·음료 등을 제공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① 빵·음료의 제공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 등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검진 후 빵·음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이상, 검진에 앞서 사전적으로 빵·음료를 제공하여 유인한 것이 아니고 검진 이후에 제공한 것으로서 검진을 유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진 후 수검자에게 빵·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식을 해야 하는 검진의 특성상 수검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관행적으로 건강검진 종료 후 수검자에게 간단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진 후 빵·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Tel. 044) 202-2827

Fax. 044) 202-3938

편집·인쇄 : (주)이문기업 044) 866-1610 <비매품>